

케냐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5
외교관계 / 9
주한주재 국기관 / 14
한국과의 주요이슈 / 14

II. 경제

경제정책 / 15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18
주요 산업 동향 / 19
정보조사 자료원 / 20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21
무역통계 / 22
투자통계 / 27

IV. 출장가이드

기후 /	28
시차.근무시간 /	29
도량형 /	29
출입국.비자 /	29
환율.환전 /	31
물가정보 /	32
교통.통신 /	34
호텔.식당 /	36
관공서 관행 /	38
공휴일 /	39
여행시 유의사항 /	39
유용한 연락처 /	42
관광명소 /	44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46
수입규제제도 /	46
관세제도 /	48
주요인증제도 /	49
지적재산권 /	49
소비자보호제도 /	50
교역관련 국가기관 /	51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54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57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58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58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60
운송 /	62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63
유형별 분쟁사례 /	64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64

우리기업 투자동향 / 65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65

투자인센티브 / 69

타당성조사 / 70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71

입지선정 / 74

공장 설립 / 76

투자관련 정부기관 / 77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79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81

조세제도 / 82

외환관리 / 84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84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케냐공화국(영문: The Republic of Kenya) (현지어 국명: Jamhuri Ya Kenya)
위 치	아프리카 동부 (인접국: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수단)
면 적	569,259 KM2 (한반도의 2.6배)
기 후	2월이 13-28도로 가장 덥고, 7월이 11-23도로 가장 추움 4월이 우기, 8월이 건기임 해안지방: 연평균 20.5℃ - 32℃, 내륙지방: 7℃ - 27℃ 고원 및 서부지방은 강우가 풍부하나 북쪽지역은 사바나 건조기후
수 도	나이로비 (Nairobi)
인 구	3,471만 (2006년 상반기 기준)
주요도시	나이로비(135만 명), 몸바사(47만 명), 키수무(19만 명)
민족(종족)	케냐인(흑인)- KIKUYU(446만), LUHYA(308만), LUO(265만) KAMBA(245만), KALENJIN(246만) KISII(131만), MASAII(38만) 등 43개 부족 아시아계 0.42%, 유럽계 0.15% 아랍계 0.2%, 기타 아프리카 0.3%
언 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통용어)
종 교	기독교(40%), 로마 가톨릭(30%), 이슬람교(6%), 기타(23%)
건국(독립)일	1963.12.12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Mwai Kibaki (대통령 겸 실권자) 취임일: 2002 년 12월 30일 임 기: 2007 년 12월 29일 (5년간)

나. 경제지표 (EIU 2006년 예상치)

GDP (시장가격)	US\$ 194 억
실질경제 성장률	5 %
1인당 GDP	US\$ 565.59
실 업 률	25.3%

물가상승률	17.8 %
화폐단위	Kenya Shilling (Ksh)
환율	US\$1=Ksh 72.10
외채	US\$ 78 억
외환보유고	US\$ 28억 976만 (2006년 6월 기준)
산업구조 (% of GDP)	농림수산업(27.5%), 제조업(13.3%), 무역·요식업(11.2%), 운송·창고·통신(10.5%), 정부서비스(14.8%), 기타(22.7%)
교역규모	수출: US\$ 59억 82 만 수입: US\$ 32억 06 만
주요 교역품	수출: 차(Tea), 커피, 원예작물, 석유제품, 시멘트 수입: 산업기계류, 원유, 차량, 철강

다. 한-케냐 관계 (2005년 12월말 기준)

체결협정	의료협정, 무역협정, 문화협정, 항공협정
교역규모	우리나라 대 케냐 수출: US\$ 4,702만 (2004년 4,568만) 우리나라 대 케냐 수입: US\$ 1902만 (2004년 1277만)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품목 - 열연강판, 합성수지 아연의 과/설, 타이어 및 튜브, 석유화학제품, 합성고무, 폴리에스테르직물, 재봉기, 축전지 등 ○ 우리나라 수입품목 - 마사, 커피, 어류의 필레트 등
교민	약 550명 (나이로비지역- 약 480명, 몸바사지역- 약40명, 기타지역- 약30명)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행정부

1) 대통령

- 케냐는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이며 부통령이 임명되어 있다.
-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국가원수 겸 군통수권자로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은 부통령, 내각, 국회의원 12명 등 임명권 및 국회 해산권을 보유한다
- 대통령은 비밀 직접선거로 선출(대통령 입후보는 당의 추천 필요)하며 궐위 시는 부통령이 권한 대행, 90일 이내 신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 현직 대통령은 Mwai Kibaki로 2002년 12월 30일에 취임하여 현존 헌법상으로는 2007년 12월까지가 임기이다.

2) 내각

- 행정부 내각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장관 및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다.
- 단, 3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정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 Office of the President
-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Development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Energy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Ministry of Finance
- Ministry of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ternational Co-operation
- Ministry of Health
- Ministry of Labour & Manpower
- Ministry of Lands and Settlement
-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 Ministry of Roads Public Works And Housing
- Ministry of Tourism and Information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Ministry of Transport & Communications
- Ministry of Water
- Ministry of Gender, Sports and Culture
-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National Heritage
- 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Affairs.
- Ministry of Cooperative Development
- Office of the Attorney-General

나. 사법부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최종항소법원(Court of Appeal): 형사 및 민사재판
- 고등법원(High Court): 형사 및 민사재판
- 하급지방법원(Resident & District Magistrate's Court): 5년 구금 이상 형사재판
- 대법원장(Chief Justice): Hon. Mr. Evans Gicheru

다. 의회

- 단원제이며, 당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한다
- 임기는 5년이며 직선의원 210명, 대통령임명 12명 등 222명으로 구성된다.
- 1998.1.27. 제 7대 국회사 개원하였으며, 2001년 6월 친 여 야당인 NDP총재 등 4명 유

입으로 KANU 당 의회 과반수를 점유하였으며, 2002년 3월 연립여당 KANU-NDP를 통합 (당 명은 KANU유지) 여대야 소 정국을 유지하였으나, 2002년 12월 총선에 의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 저 NARC (National Rainbow Coalition)당 집권체제로 바뀌었다.

- 참고 영문 웹사이트: <http://www.kenya.go.ke/>

□ 선거제도

케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 선출은 총 8개주 중 5개주 이상에서 각각 투표자수의 25% 이상 득표자중 최고득표자로 결정한다. 단, 5개주 이상 각각 25% 이상 득표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위 1위와 2위자만이 재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하되, 상기한 5개 주에서 25% 이상 득표한 해당자가 없을 경우 계속하여 재투표 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의원은 당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총 의석 수는 222석으로 직선 210석, 대통령 임명 12석으로 구성된다.

□ 정당제도 및 현황

1) 레이보우 연합당 (NARC, National Rainbow Coalition)

- 의장: Mwai Kibaki
- 사무총장: Joseph Munyao
- 1991.12월 창당
- 1997.12월 총선에서 41석을 확보, 제 1 야당으로 부상
- 2002년 총선을 겨냥한 군소정당 통합을 시도, 구여당 KANU에서 이탈한 Rainbow Coalition과 DP, Ford-Kenya등과 연합하여 NARC (National Rainbow Coalition)로 통합
- 2002.12월 총선에서 Kibaki대통령 당선 및 원내 최다수 의석확보(NARC 총의석 132석)

2) 케냐 아프리카 민족동맹(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

- 실무위원(* 2002년 3월 KANU-NDP합당이 후 개편된 내용)
 - 총재대행: Uhuru Kenyatta
 - 사무총장 Julius Sunkuli
 - 재무: Hon. Yusuf Haji
- KANU당 역사
 - 1960. 3. 키쿠유 중앙연맹(KIKUYU CENTRAL ASSOCIATION)과 루오정치운동(LUO POLITICAL MOVEMENT, 전 KANU 사무총장 TOM MBOYA와 전 부통령 Odinga중심)이 결합, KANU당 창당
 - 1960. 8. 칼렌진 정치연합(KALENJIN POLITICAL ALLIANCE, 모이 중심)과 마사이 연합전선 (MASAI UNITED FRONT)이 케냐, 아프리카 민주동맹(KADU) 창당
 - 1964. 11. 63년의 총선에 KADU당 대패, KANU당과 합당, Odinga 부통령에 피임
 - 1966. 4. Odinga 부통령, 케냐타 대통령과 결별, KPU(KENYA PEOPLE'S UNION)창당
 - 1969. 7. 케냐타 대통령의 후계자로 확실히되던 KANU 사무총장 TOM MBOYA 피살
 - 1969. 10. KPU 불법화 규정, Odinga 구속(71.3. 석방 후 KANU 재입당)
 - 1978.8.22. 케냐타 사망으로 Moi 대통령(부총재)이 총재로 취임
 - 1982.6. 9. KANU당을 유일한 합법정당으로 하는 개헌안 확정
 - 1991.12.19. 다당제 헌법개정으로 그간 보유한 유일정당 자격 상실

- 1992.12.29. 다당제하 총선으로 재집권 모이총재 4선 및 KANU당 의회 과반수 점유
 - 1997.12.29-30 총선으로 재집권 모이총재 5선 및 KANU당 의회 과반수 점유
 - 2001.6.11 친 여 야당 NDP 총재 등 4명의 입각으로 KANU-NDP 연립정부 출범
 - 2002.3.18 연립 여당 KANU-NDP 통합, 당명은 KANU 유지
 - 2003.10.11 Raila Odinga 사무총장 등 핵심인사 탈당. NARC에 합류
 - 2003.12.27 총선에서 대패, 제 1 야당으로 전락
- 민족회복협의회 케냐당 Forum for Restoration of Democracy (FORD Kenya)
 - 의장 Wamalwa Kijana
 - 사무총장 Gitobu Imanyara
 - Wamalwa 의장과 Raila Odinga(Odinga 초대의장의 아들)간의 당권 다툼으로 1996. 12월 Odinga는 동 당을 탈퇴, 국가개발당(NDP)에 합류한 후 2002. 3.18 KANU와 통합
 - 2003.1.3 Wamalwa Kijana 의장 부통령에 임명
 - 기타 군소정당
 - SDP, Safina, Ford-People, Shirikisho, Ford-Asili, KSC (Kenya Social Congress), KNC(Kenya National Congress) 등

정당별 의석분포 비교

정당별	직선직	지명직	합계
NARC당	125	7	132
KANU당	64	4	68
Ford-People	14	1	15
SAFINA	2		2
Ford-Asili	2		2
SKSP	2		2
Shirikisho	1		1
Total	210	12	222

3. 주요인사

1. 대통령실 (OFFICE OF THE PRESIDENT)

- 이민장관 (Minister of State Immigration and Registration of Persons)
 - Hor. Gideon Konchelah
 - 차관(Permanent Secretary/SC): AMB FRANCIS MUTHAURA
- 지방행정 및 내무장관 : Hor. John Michuki
(Minister of state provincial administration and national security)
 - 차관(Permanent Secretary, Provincial Administration): CYRUS GITUAI
- 국방장관 (Minister of State Defense): Hor. Njenga karume
 - 차관(Permanent Secretary, Defense): ZACHARY MWAURA

- 공무원장관 (Minister of State, Public Service): Hon. Moses Akaranga
- 특별프로그램 장관 (Minister of State, Special Programmes): Hon. John Munyes
 - 차관: Ms. Rachel Arunga
- 차관 겸 고문 (Advisor/ Permanent Secretary): STANLEY MURAGE
- 비서실장 (Private Secretary/Comptroller): HYSLOP IPU
- 대변인 (Public Communications Secretary/Government Spokesperson)
 - DR. ALFRED N. MUTUA

2. 부대통령실 겸 내무부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AND MINISTRY OF HOME AFFAIRS)

- 부대통령: Hon. Moody Awori
- 차관: DR. AMB. WARIO LUKA HUKKA 53, PhD, (MARSABIT)

3. 청소년 진흥성 (MINISTRY OF YOUTH AFFAIRS)

- 장관: Mohammed Kuti
- 차관: MAJOR (Rtd) KINUTHIA N. MURUGU

4.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장관: Hon. Amos Kimunya
- 차관: MR. JOSEPH KINYUA
- 비서관: MUTUA KILAKA
- 투자담당관: ESTHER KOIMET
- 경제담당관: DR. KAMAU THUGE, PhD (KIAMBU)

5. 국가기획개발부 (MINISTRY OF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 장관: Hon. Henry Obwacha
- 차관: DR. EDWARD SAMBILI, 48, PhD, (RIFT VALLEY)

6.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장관: Hon. Raphael Tuju
- 차관: AMB. BOAZ MBAYA

7. 동아프리카공동체 (MINISTRY OF EAST AFRICAN COMMUNITY)

- 장관: Hon. John Koech
- 차관: AMB. PETER OLE NKURAIYIA

8. 도로 및 공공사업부 (MINISTRY OF ROADS AND PUBLIC WORKS)

- 장관: Hon. Simeon Nyachae
- 차관: AMB. MAHAMUD M. MAALIM

9.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장관: Dr. Noah Wekesa (권한대행)
- 차관: PROF. KAREGA MUTAHI (교육차관),
Prof. Crispus Makau Kiamba (과학기술 차관)

10.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장관: Hon. Kipruto Rono Arap Kirwa
- 차관: DR. ROMANO KIOME, 50, PhD, (IMENTI SOUTH)

11. 축산어업부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DEVELOPMENT)

- 장관: Hon. Joseph Konzolo Munyao
- 차관: DR. JACOB OLE MIARON, 46, PhD, (KAJIADO)

12.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장관: Hon. Charity Kaluki Ngilu
- 차관: DR. HEZRON NYAGITO, 47, PhD (KISII)

13. 관광사업부 (MINISTRY OF TOURISM AND WILDLIFE)

- 장관: Hon. Morris Dzoro
- 차관: MS. REBECCA MWIKALI NABUTOLA

14. 정보통신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 장관: Hon. Mutahi Kagwe
- 차관: DR. BITANGE NDEMO, PhD, 46, (KISII)

15. 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 장관: Hon. Chirau Ali Mwakwere
- 차관: MR. GERRISHON IKIARA

16. 지방자치부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 장관: Hon. Musikari Kombo
- 차관: MR. SOLOMON BOIT

17. 스포츠문화공보부 (MINISTRY OF GENDER, SPORTS, CULTURE AND SOCIAL SERVICES)

- 장관: Hon. Maina Kamanda
- 차관: RACHEL DZOMBO, 48, (KILIFI)

18. 수자원성 (MINISTRY OF WATER)

- 장관: Hon. Mutua Katuku
- 차관: MAHBOUB M. MAALIM

19. 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IES)

- 장관: Hon. Abdi M. Mohamed
- 차관: ENG. DAVID STOWER, 49, (BUSIA)

20.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 장관: Hon. Henry Obwocha (권한대행)
- 차관: MR. PATRICK NYOIKE

21. 무역산업부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장관: Hon. Dr. Mukhisa Kituyi
- 차관: MR. DAVID NALO

22. 토지주택부 (MINISTRY OF LANDS AND HOUSING)

- 장관: [토지] Hon. Prof. Kirutha Kibwana (권한대행)
- 장관: [주택] Hon. Soita Shitanda
- 차관: [토지] STEPHEN KOMBO MWERO, 46, B.A (KWALE)
- 차관: [주택] Tirop Kosgey

23. 환경 자원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장관: Hon. Prof. Kirutha Kibwana
- 차관: PROF. GEORGE O. KHRODA

24. 인력자원부 (MINISTRY OF LABOUR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장관: Hon. Dr. Newton Kulundu
- 차관: AMB. NANCY KIRUI

25. 기업진흥마케팅부 (MINISTRY OF CO-OPERATIVE DEVELOPMENT AND MARKETING)

- 장관: Hon. Peter Njeru Ndwiga
- 차관: MR. PATRICK KHAEMBA

26.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AFFAIRS)

- 장관: Hon. Amos Wako
- 차관: DOROTHY ANGOTE

4. 외교관계

가. 외교노선

케냐는 비동맹 중립노선과 OAU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남아공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나. 서방제국과의 관계

비동맹, 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으나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영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시 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사태 이래, 케냐는 소련을 비난하고, 미국의 인도양 군사력 증진에 따른 몸바사항 및 공항의 미 해·공군 시설 사용 증가 허용,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동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화시켰으며 모이 대통령의 79. 5월 영국, 이어 80. 2월의 서독 및 미국 공식 방문을 단행, 케냐의 친서방 노선 전환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들 국가들로부터 경제 및 군사원조의 증가를 기하였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서방제국의 민주화 개혁, 인권보호, 부정부패 척결 요구 등으로 대립관계로 전환 되었으며(90.9월 노르웨이에 대하여는 내정간섭을 사유로 단교 조치함.), 91년 11월 서방제국의 대 케냐 원조 중단 사태까지 초래하였으나, 이후 케냐정부가 다당제 개헌 등 본격적인 정치, 경제 개혁을 통해 서방제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93년11월 원조재개 등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케냐정부는 서방제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2000년 6-7월 IMF 및 세계은행의 원조재개를 얻어내기 위해 이들 기구 및 서방제국이 요구하는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등 경제적 필요에서 서방제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2002. 11월 Mombasa항구의 대이스라엘 테러사건으로 이스라엘 및 미국과의 대테러전 공조체제를 강화 하였다. 2002.12.30일 Kibaki 대통령 취임 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재건을 위해 서방측이 요구하는 부정부패 척결에 매우 적극적 조치를 강구, 대서방 관계를 강화 중에 있다.

다. 인접국과의 관계

아프리카 주요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아프리카 제국의 기본입장에 적극동조, 제 3세계 이념 및 투쟁 목 표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제정치, 경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키 위해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제통합 노력 강화 등 실 질 호혜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단,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모잠비크 등 인근 국가의 지역 분쟁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특히 수단 및 모잠비크)하여 역내 지도국가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라. 수단과의 관계

수단과는 과거 니메이리정부의 친서방 중립정책 추구라는 공통 대외정책 및 케냐를 경유한 남수단과의 교통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수단의 반란단체인 SPLA의 나이로비 원조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나 93.9.6-7간 아디스아바바 개최 제14차 IGADD (정부간 한발 및 개발기구) 정상회담에서 케냐, 이디오피아, 우간다, 에리트리아 대통령이 참가하는 "수단문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Moi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케냐는 수단 내분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Moi 대통령은 94.3.9일 및 94.3.17일 수단문제 협의를 위한 정상급회담을 연속 개최하고(두 번 째 회담에는 수단 대통령 및 2개 반정부 단체대표도 참석) 94.3.21-23일에는 IGADD상임 위원회(외 무장관 모임)주관 평화협상을 나이로비에서 성공적으로 주관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도적 원조 재개 등에 합의하였다.

97.10.29-11.11일 및 98. 5.4-5일 주재국 외무장관 주재로 나이로비에서 수단정부측과 반군 SPLA간 평화회담을 개최하였으며 IGAD 후원 하에 양 분쟁 당사자간 이견을 줄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상기 인도적분야 합의도달을 계기로 Moi 대통령은 분쟁해결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바, 일단 IGADD 수단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단사태 악화 시 예상되는 엄청난 수단 난민유입을 일단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5년 1월 9일, 케냐 신정부를 이끌고 있는 키바키 대통령 정부의 효과적인 외교력이 영향을 발휘해 21년이 넘는 내전을 종식하고 수단정부와 반군간에 극적인 평화조약이 이뤄졌다.

마. 소말리아와의 관계

한편 케냐는 소말리아에 대해 국경문제 등 역사적 적대관계에 비추어 소말리아-이디오피아 분쟁에 있어 서도 이디오피아에 비교적 호의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소련, 쿠바의 대 이디오피아 원조에도 이를 함구하고 비호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소말리아 내전 발발 후 케냐는 Barr 전대통령에 대한 피신처 제공 및 내전 과정에서 Barr의 사위인 SNF 파 대표 Gen. Morgan에 대한 은밀한 지지설 등으로 소말리아 내 여타 파벌의 불신감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32만 명에 달하는 소말리아 난민의 유입 등으로 케냐는 소말리아 사태 해결에 있어 수단 분쟁해결 노력과는 달리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대신 92년 이후 UN의 소말리아 작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제반 병참기지로써 지원 역할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케냐는 94.3.17일 소말리아의 모든 파벌들이 나이로비에 회동하여 "평화선언"의 합의에 이르도록 조장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유엔역할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0년에 지부티에서 화해조약회의를 개최하여Abdulkassim Salad Hassan을 대통령으로 Mohamed Abdi Yusuf를 수상으로 하는 소말리아 임시정부(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 TNA)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영향력이 남부 소말리아의 수도인 무가디슈와 몇 개 지역에만 미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2001년 10월, 케냐가 동 소말리아 화해 및 회복 위원회를 초청하여 모든 단체를 총괄하는 임시국회와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며, 지속적인 외교노력으로 2004년 8월 소말리아의 반군 및 5개 부족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케냐 내에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국회의원 275명을 선출하게 된다.

결국, 2004년 10월 10일 임시국회에서 2명의 대통령후보를 두고 총선을 실시, 전직 외교관 겸 국무위원 이던 Dr. Abdullahi Adow를 110표차로 제치고 189표를 얻은 Mr. Abdullahi Yusuf Ahmed를 대통령으로 선출, 2004. 10. 15일 케냐 모이 주 경기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바.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와는 과거 멩기쉬 정권과는 이념적 문제 등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91.5월 멩기쉬 정권 붕괴 후 Zenawi 대통령의 집권을 통해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93.11.1-2일간 Zenawi대통령의 케냐방문을 통해 양국은 각료급 공동위원회 및 국경문제협의 공동 위원회의 정기적 개최에 합의하고 국경지역 범죄 조절을 위한 공동노력과 함께 소말리아, 수단 문제 등 지역분쟁 해결을 위하여도 공동의 노력을 경주기로 하는 등 선린 우호 관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98. 7. 이디오피아 수상은 케냐 Moi 대통령 초청으로 케냐를 방문,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케냐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99.1.24일 케냐 Moi 대통령은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에리트리아를 방문한데 이어 1.28일 이디오피아를 방문한 바 있다.

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관계

케냐와 남아공과의 관계는 90. 12월 Botha 외무장관의 케냐방문에 이어 남아공 항공의 나이로비 취항 개시와 양국간 관광 및 상용 목적 비자발급 완화 등으로 개선되었으며, 91.6.8-9일간 De Klerk 대통령 이 남아공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케냐를 방문하여 양국 협력방안을 공식 협의하였다.

이후 케냐정부는 91.11월 남아공정부와 국교를 수립하고 남아공 상주공관 설치를 허용 하였으며 92년 6월 모이대통령은 리오 환경정상회담 참석기회에 남아공을 경유 방문한 바 있으며, 94. 5월에는 Mandela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99. 6. Mbeki 남아공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였다.

Kibaki 대통령 취임 후 2003. 8월 남아공 공식방문 및 Mbeki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관계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아. 아랍제국과의 관계

중동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 국가창설을 지지하는 한편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촉구하는 등 기본적으로 아랍제국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이스라엘과는 63년 이후 외교관계를 유지하다가 73년 10월 전쟁을 계기로 단교하였으나 88. 12월 복교 하였으며 Moi 대통령은 94. 1.9-12일간 사상최초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아랍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 국제협력체 참여 정도

□ EAC(동부아프리카 공동체) 국가와의 관계

EAC가 77년에 와해된 이후, 케냐와 사회주의국가인 탄자니아 및 우간다와의 관계는 냉각 내지는 소원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으나 93년 11월 EAC의 부활을 계기로 93년 12월 케냐독립 30주년에 탄자니아, 우간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로 접어들었다.

EAC 붕괴 후 탄자니아와의 국경재개, EAC 자산배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80년 1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후 수차 협의를 거쳐 83. 11월 자산 재분배에 합의하였다.

특히 탄자니아와는 83. 11월 Arusha 협정 이후 즉시 국경을 개방하고 83. 12월 외교관계 개설, 84. 6월 양국대사관 설치 및 84. 9월 양국 교류관계 원상 회복에 이어 모이 대통령의 84. 12월 탄자니아 방문 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였다.

케냐, 탄자니아는 85. 2월부터 철도 및 빅토리아 호수 용역서비스의 상호 재개에 합의하였으며, 91. 3.13일 탄자니아 개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민 희망에 따라 시민권부여, 양국 국경무역 합법화 및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우간다와의 관계는 아민 대통령 시 국경분쟁, 76년 엔테베사건, 우간다의 친소련정책 등으로 비교적 냉각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78.11월 우간다·탄자니아 전쟁 발발 시 케냐는 탄자니아와의 불화관계로 우간다의 아민 정권에 대해 호의적 중립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79.4.11일 아민 정권이 붕괴되고 Yustfu Lule을 대통령으로 하는 신정부가 수립되자 케냐는 우간다 경제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원조제공을 약속했으나, 이후 우간다의 정권 교체 및 정정불안 등으로 양국 은 불안정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케냐 정부는 80.4.6. 우간다 주재 초대 고등판무관을 임명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일단 정상화 시키고 81.1.5. Moi 대통령과 Obote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하였다.

이후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85.9월 Obote 정부의 붕괴 및 86. 1월 현 Museveni 정부 수립 과정에서 Obote 추종세력 및 약 3만명의 우간다 난민의 케냐 유입 등으로 양국관계는 87년 극도로 악화 되었으나 87. 9월 소위 추적권 발동 시비 이래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관계는 우간다로부터의 침공설 등으로 수시 긴장 국면이 있었으나 90.8.17일 양국 정상회담 에서 양국관계 정상화 회복, 대사관 교환 등에 합의 하였으며, 이후 우간다 난민의 귀국, Museveni 정부의 확고한 국내기반 구축 및 EAC 부활 협의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협력 관계로 접어들었다.

유사한 상황하에서 91.11.22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 대통령은 나이로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EAC 부활을 위한 외무장관 위원회 설치, 선린우호관계 유지 및 주권 영토보전 원칙 등을 재확인 하였으며, Moi 대통령은 93.11.15-17일간 케냐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우간다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과거의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 하였다. (동 방문 이후 93.12.14일에는 나이로비-캄팔라간 직통열차가 재개통 됨.)

96. 3월 3국은 경제통합을 위하여 East Africa Cooperation 사무국을 설치하고 96. 5월 East African Community를 대치하는 Tripartite Commission for East African Cooperation을 설치 하였으며, 99. 1월 제 3차 3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99. 7월부터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를 폐지하였으며, 99.7월 East African Community 창설 조약을 비준하였다.

2001. 1월 23년 만에 EAC가 재출범하게 되었다.

2003. 6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EAC 3개국정상회의에서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3국간 통상 및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함으로써 지역협력 분위기가 제고되었으며, 2003. 7월 Kibaki대통령의 탄자니아 및 우간다 방문으로 EAC 3국간 특수관계를 과시하였다.

□ 국제기구 활동

케냐는 동부아프리카에서 점하는 비중과 특히 케냐타 전대통령의 아프리카 지도층에서 차지했던 정치적 비중으로 OAU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케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97-98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1973-74년에도 선출)된 바 있으며,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국을 나이로비에 유치하였다. (개도국 중 유엔직속기구 본부사무국을 유치한 국가 는 케냐가 유일함.)

73. 9월 IMF총회, 76.5월 UNCTAD 제 4차 총회, 76.10월 UNESCO 총회, 81.6월 OAU 제 37차 정기각료회의 및 제 18차 정기정상회담, 85년 유엔 여성회의, 94.5월 아프리카 개발은행 30차 총회 등을 나이로비에 유치하는 등, 국제기구에 있어서의 활약상도 현저하다.

케냐는 또한 90년대들어 유엔 평화유지활동(PK0)에도 적극 참여하여 보스니아, 라이베리아, 쿠웨이트, 모잠비크 등에 약 3,000명의 군인 및 경찰을 파견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 차드에도 PK0를 파견했다. 특히 라이베리아의 UN/PK0 사령관도 케냐인이다.

케냐는 OAU를 역내 주요 협력기구로서 높이 평가하고 동 기구활동에 적극 참여(85.2월 OAU 해방위원회 특별기금으로서 20만불 기증)하고 있으며, 동결의안을 존중하고 있다. 86. 1월 창설된 IGADD(정부간 한발 및 개발기구)가 동부아프리카 6개국의 경제발전 및 상호간의 우호협력증진 기구로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 기구 창설 시 80만불의 기여금을 공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93. 9월 이후 Moi 대통령은 IGADD의 수단문제 정상급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단분쟁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 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96. 3월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IGADD 정상회의에서는 IGADD의 명칭을 IGAD (정부간개발기구)로 변경하고 MOI 대통령을 의장으로 재 추대한 바 있다.

97. 7.8-9 양일간 IGAD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수단, 소말리아 등 분쟁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동 기구는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지역적 정치포럼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역분쟁해결에 실패하면서 동 기구의 영향력에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2002. 7월 케냐 Machakos 개최 IGAD 정상회의에서 Moi대통령의 주도로 수단 인민해방군 (SPLA) 지도자인 John Garang을 포함한 반군지도자 및 수단 정부측은 6년 내 수단남부지역 내 자치 결정 주민투표를 실시 및 이슬람법 미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Machakos 의정서'를 체결함.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케냐 대사관 및 명예영사관

- 주한 케냐 대사 - H.E. Ambassador Mary D. Odinga(일본 상주)
- 명예영사관 연락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파라다이스 빌딩 1층
 - 실무담당: 안 진 선(e-mail: ilovekenya@paradise.biz)
 - 전화: 02-2271-2127
 - 팩스: 02-2271-2130
 - 웹사이트: <http://www.ilovekenya.com/kor/>
- 명예영사관 업무시간 : 09:00 ~ 12:00 AM 01:30 ~ 04: 00 PM
 - 월요일~ 금요일 (국, 공휴일 및 임시 휴관일 제외)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 케냐 투자는 198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은행 신고기준으로 15건 904만불 수준이며, 허가기준으로는 11건 220만불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지 개인 및 실 투자 규모를 보면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케냐의 최대 투자분야는 호텔 및 카지노사업으로 파라다이스 그룹이 현지 최고급 호텔인 Safari Park Hotel & Casino에 투자 및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발공장, 가방공장, PVC제조, 카지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가구제조업체인 환성 가구 외에 2개사가 총 340만불 상당의 현지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되며, 2005년 12월까지의 동물의약품 관련 1개 업체가 23만불 정도의 투자를 하였다. 한편 케냐의 대 한국 투자는 전무하다.

나. 현안사항

한국과 케냐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추진 중에 있다.

다. 수입규제사례

케냐가 한국산에 대한 차별적인 반덤핑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케냐 상무부에서는 산하 기관인 케냐표준청(KEBS, Kenya Bureau of Standard)을 통해 일부 저가, 저 품질 수입품 유입에 따른 조치로 케냐 표준청으로 하여금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제품의 사례로는

케냐 표준청에서 한국산 라면에 대한 별도 규격/성분기준이 없어 파스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수입통관 시 한국표준 준수 마크 미표기를 사유로 케냐 품질규정에 미달한 것으로 판정하여 환적한 사례도 있다. 또한 한국의 젤타입 볼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고 한국산의 젤타입 규격 미만이며 품질 표증 마크가 없다고 기준 미달 처리한 사례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례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업체들이 현지 수입상과 거래 시 수입상을 통해서 표준청으로부터 품질 및 규격 승인 절차를 확인 요청하는 등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신정부 출범이후로는 위조 및 밀수품 근절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04년 6월 11일자 발표된 정부예산안에서는 케냐표준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의심가는 품목에 대한 선사 무단 검색, 가택수색, 창고수색 등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벌금도 대폭 인상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케냐 내의 품질인증관련 기본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케냐표준청 홈페이지 ☞ <http://www.kebs.org>)

II. 경제

7. 경제정책

가. 개요

1992년 12월 다당제 하 총선을 실시하여 정치민주화를 추진한 이래 각종 경제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91년 이래 침체 되어온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 93년에는 2.19-5.14일에 각각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주안점으로 둔 각종 경제자유화 조치(외환통제 완화, 금융시장 자유화, 가격통제 완화, 수입허가제 폐지 및 국영기업의 민영화 촉진 등)를 단행한 바 있으며 94년 중 2차례(2.18일 및 5.25일)에 걸친 외환자유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경제자유화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고 있다. 95. 6월 외환관리 관련 완전 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사설 환전소를 인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각종 경제개혁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93, 94년 중 고율의 인플레이션과 환율 불안정이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 되었으나, 94년말 이래 거시경제지표가 안정세를 나타내는 등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이 점차 향상 되고 있었으나, 1997년 이후 IMF의 원조종단, 엘니뇨 등의 자연재해, 1999년 이후의 장기화된 가뭄 등으로 인해 전에 없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00년 7월 이후, IMF의 지원이 재개 되었으나, 원조의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부정부패척결, 민영화 추진, 정부공직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원조금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2002년 말 총선 이후 새로 들어선 키바키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의 획기적인 경제 살리기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나. 주요 경제정책

1) 농공병진책

농업과 공업은 각각 GDP의 24.1% 및 13.0%를 차지하는데, 케냐정부는 동 분야와 같은 제1차 및 2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경제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낙후된 영농방식 현대화 및 농업부문 구조 개편을 통한 식량 자급화가 우선 과제이며, 나아가 경작면적(현재 국토의 18% 불과)확대 및 식량 수출 및 농촌-도시간의 소득 격차 해소가 목표이다.

공업부문의 투자는 제 7차 5개년 계획기간 (94-98) 중 중점적으로 지원되었으며, 특히 공업부문의 60% 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는 바, 20여 개의 기능공 및 숙련공 양성 전문 학교 가 동 기간 중 설립, 운영 중이다. 동 농공병진책을 추진하기 위해, 88년 하반기에 World Bank로부터 SALS(Structural Adjustment Loans)를 도입, 적극적인 구조 개편을 착수한 바 있다.

2) 정부의 규제 축소

케냐 경제는 과도한 정부개입,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등으로 상당히 왜곡되어 온 바, 지난 88. 2월 타결된 IMF/IBRD와의 협상과 93. 11월 파리 공여국 회의에서 동 국제금융기구의 요구 조건인 재정 적자 축소, 경제구조 개편 및 예산 합리화 등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비효율적인 부문으로 지적 되어 온 국영 기업의 민영화, 공무원 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아울러 93년, 94년에 걸친 일련의 경제자유화 조치로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강력히 전개 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키바키 신 정부는 각종 정부기관의 민영화 및 정부의 무역규제, 정부예산의 투명성 있는 운영 등의 IMF의 공여금 원조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예산의 합리화

케냐의 94/95 회계 년도 예산규모는 1,457억 실링으로써 93/94 회계 년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매 년 격심한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운용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예산 합리화의 주요 골자는 누적적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수확대와 방만한 재정지출 축소이며, 구체적 방안은 원조 공여국 및 국제금융기구의 권고에 따라 작성, 시행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는 2001년 재정 수입 2,163.9억실링 대비 재정 지출 2,329.2억실링으로 165.3억실링의 재정적자를 보였으며, 2002년에는 2,034.4억 실링 수입 대비 2,257.6억 실링 지출로 223.2억실링의 재정적자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2,256.9억 실링 대비 2,641.4억실링으로 무려 384.5억실링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3년 신정부 출범 시 구정권으로부터 사실상 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정권을 물려받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2004년부터는 신정부의 비상한 정부예산확보 정책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당해년도 재정수입은 2,709.1억실링에서 재정지출 2,821.9억실링으로 재정적자를 112.8억 실링으로 급격히 감소 시켰으며, 2005년에는 수입 3,047.1억 실링 대비 지출 3,037.1억 실링으로 사상 최초로 1억실링 상당의 재정 흑자 를 기록하여 정부의 지출 억제, 세수 증대를 통한 균형예산 집행 노력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합리적 금융. 통화운영

92년 12월 총선을 계기로 상당량의 통화가 남발되는 등 인플레이션을 야기, 경제 불안정이 초래됨으로 써 93년도에는 유동성 흡수조치, 정부채권 발행, 화폐발행 억제, 기준율 상향 조정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실 은행을 과감히 정리하였고 아울러 중앙은행의 체질개선을 위해 총재와 부총재를 교체하면서 금융 질서를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5) 투자확대 및 외국인투자유치 - 수출산업육성 및 고용증대 목표

케냐의 인구증가 추세(연 2.4%)로 볼 때, 투자확대는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며,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력 흡수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7-8%의 높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내. 외국인 투자확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93 년과 94년에 걸쳐 무역자유화 조치, 외환자유화 조치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환경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2002 년 하반기부터는 케냐 투자진흥청(IPC)의 투자인정 기준을 약 3만불 수준으로 대폭 내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나이로비 주식 시장에 등록된 회사에 대하여 외국인이 최대 75%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 시장관리법을 개정 시행 하고 있다.

6) 지역경제협력 강화

케냐는 우간다, 탄자니아와 함께 197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던 EAC(East African Community 또는 Cooperation)를 2000년 7월부터 부활. 발전시킴으로 해서 3국간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체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PTA(특혜 무역 지대: Preferential Trade Area)를 통한 경험. 교역증진에도 적극적이었으며 93년부터 개편된 COMESA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Common Market of East and South Africa)에 회원으로 참여하였고, 2000년 10월 FTA에도 참가, 주도 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7) COMESA

□ 추진배경 및 구성목적

세계적인 경제통합 움직임(EU, NAFTA, ASEAN등)에 촉구 되었으며 현존 PTA가 역내 경제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치 못한다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시장 창설을 위하여 제시하였다. ('93년 11월 PTA 정상 회담에 서 COMESA 구성에 관한 조약체결, 94. 12월 동 조약 발효)

역내 생산력 증대, 관세장벽 철폐, 공동대외관세 채택 등을 목적으로 하고, 99.5.20-21일간 나이로비 에서 COMESA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0.10.31일에 20개 회원국간에 COMESA 자유무역지대의 출범 을 이루었다.

○ 규모

- 총인구 및 면적: 3억8천만, 12.88백만 평방km
- 총 GDP 규모(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연도인 2003년 추정치): 2,074 억불
- COMESA 역외 수출(2003년 추정치): 329억불
- COMESA 역외 수입(2003년 추정치): 473억불
- COMESA 역내 무역량 (2003년 추정치): 59.6억불
- 주요 지하자원: 239.7억불 (추정치)
- COMESA 수입(인산염(3000억 M/T), 석유(1050억 톤), 상당량의 우라늄, 니켈, 구리, 코발트 매장 (금, 다이아몬드, 백금, 크롬, 망간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대부분 차지)

○ PTA와 COMESA의 관계

- PTA는 COMESA 구성 완료시점에서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COMESA로 전환됨.
- COMESA는 PTA의 문제점, 결함을 보완한 것으로서 보다 강력한 경제통합체로 활동하고 있음.

○ 회원국(20개국)

- 앙골라, 브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0개국

8) EAC 관세동맹

□ 시행배경

동아프리카 공동체(이하 EAC)는 소비인구 1억명, GDP 250억불 규모의 케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 삼국의 정치, 경제 동맹체로 동 관세동맹을 필두로 단일 소비 및 투자시장을 형성하여, 향후 EU(European Union)와 같은 단일화폐사용을 비롯, 궁극적으로 정치연합까지 진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동맹을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정치 및 경제통합의 포석단계인 동아프리카 공동체 관세동맹 합의는 2003.11월, 2004.1월 두 차례 무산되다가 2004년 3월 2일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삼국 정상들이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으나,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일피일 연기되다가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하게 되었다.

□ 관세동맹 내역

2006. 1.1일부터 시행된 EAC 관세동맹은 역내 외 국가로 구분해서 적용되는데, 역내 관세동맹 국가간 거래에는 단일시장을 목표로 무세(0%)가 적용되며, 역외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부자재는 0%, 중간재는 10%, 소비재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의 산업발전 단계가 우간다, 탄자니아 보다 월등하여 향후 5년간 적용될 경과규정이 있는데, 우간다 및 탄자니아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케냐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5년 후인 2010년에는 완전 무관세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율 및 정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 홈페이지 (영문) www.eac.int 를 참조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2005년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무역, 호텔 및 요식업의 26.6%성장에 기인한다. 다른 분야에서도 농업 6.8%, 제조업 5.0%, 건설업 7.2%, 금융 서비스 8.1% 등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경제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6 상반기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2005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4월에 많은 비가 와서 평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한 관광과 통신분야에서 강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2006년 한 해 5%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1분기에는 가뭄으로 인한 급격한 식품가격 인상과 에너지, 연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4월의 긴 우기로 인해 야채 값 등이 다시 떨어

저서 2006년 하반기에는 농작물 수확이 평균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3월에 11.36%를 기록했던 평균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달 후인 4월에는 11.31%, 5월에는 11.2%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는 특히 8월에 이루어질 추수 기간이 지나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4월 식료와 에너지분야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이 정부 목표 인플레이션이었던 5% 이하로 내려가 4.9%를 기록하였고 나아가 더욱 감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는 높은 유가의 지속과 계획된 높은 전기 가격으로 인해 누그러질 것이다. 2006년도에도 평균 인플레이션이 9%에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케냐 실링은 2006년에 계속 강세여서 유로 기준 오름세는 2006.3월 기준으로 12 개월 동안 1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케냐 실링이 이전보다는 약해지는 속도가 느리긴 하겠지만 2006년 하반기에 다시 하락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케냐의 현 무역적자는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음으로 인해 2005년 GDP의 8%로 예상된다. 2006년 상반기의 가뭄으로 인해 다소 감소된 농업 생산물 수출과 함께 제조업, 재 수출, 재료, 원예 수출이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06년에는 무역적자가 GDP의 7.6% 폭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자료원1: Economic Survey 2006년

자료원2: 케냐 중앙 은행 Monthly Economic Review 2006년 5월호 참조(2006년 6월 현재 최근 자료)

9.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동향

2000년 0.6%의 저조한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01년 4.4%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다가 다시 2002년 0.4%로 성장률이 급락하였다. 2003년 2.8%를, 2004년에는 4.3%, 2005년도에는 기록적인 5.2%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전반적인 경제회복이 이루어 졌고 2006년에는 가뭄의 영향으로 다시 약간 감소하여 5.0%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GDP구성

(불변가격기준, 단위: 백분율 %)

	2003년	2004년	2005년
농업	23.94	24.20	24.20
제조업	12.99	9.90	10.50
무역·호텔·요식업	12.66	11.20	12.20
운수·저장·통신	6.31	10.30	10.90
정부서비스	14.53	14.80	14.40
건축업	2.36	3.60	4.00
기타	27.21	23.2	22.80

자료원: Kenya Monthly Economic Review, 2006년 5월호

분야별 성장률

	2003	2004	2005
농업	2.4	1.4	6.8
제조업	4.9	4.1	5.0
무역, 호텔, 요식업	-19.1	24.6	26.6
운수, 통신	4.9	9.7	8.3
정부서비스	2.6	1.8	2.8
건축업	1.7	3.5	7.2
금융서비스	1.7	1.5	8.1

자료원: 케냐 중앙은행 발행 Monthly Economic Review 2006년 5월호(2006년 6월 현재 최근 자료)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웹사이트

1) 케냐중앙은행: www.centralbank.go.ke

- 매월 Monthly Economic Review 매거진 발행, 다운로드 가능

2) 케냐투자진흥청: www.investmentkenya.com

- 각종 투자관련 정보

3) 케냐 통계청: www.cbs.go.ke

- 각종 통계자료 게시
- 현재 전산통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최근 정보는 직접 수작업으로 입수 중

4) EIU 통계자료: www.eiu.com

나. 인쇄물

1) Economic Survey

- 정부 간행물로 매년 회계 년도가 끝나는 6월이 후 발행
- 전년도 종합적인 경제 지표 및 전반적인 통계자료 수록

2) Estimates-Recurrent Expenditure

- 정부 간행물로 매년 회계 년도에 발행
- 정부 지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수록

3) Estimates-Development Expenditure

- 정부 간행물로 매년 회계 년도에 발행
- 정부 분야별 개발프로젝트 별 예산안 수록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케냐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2	2003	2004	2005
GDP(억불)	131.91	150.36	161.31	194
실질 GDP성장률 (%)	0.40	2.80	4.30	5.2
1인당 GDP (불)	408.47	425.90	416.18	565.59
인구(백만명)증가율(%)	31.50(1.94)	32.20(2.22)	32.80(1.86)	33.4(1.83)
환율(연평균, Ksh/\$)	78.70	75.93	79.28	75.55
인플레이션 (%)	1.96	9.82	11.62	10.3
외환보유고 (억불)	16.14	18.88	21.38	25.34

자료원1 : Monthly Economic Review 2006. 5월호(2006년 6월)

자료원2 : EIU, Country Profile 2006

물가 금융지표

지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2000=100)	133.56	146.67	163.7	145.8	167.7
소비자물가 상승률(%)	1.96	9.82	11.62	10.3	17.8
통화량(M3X, Ksh: 십억)	406.0	453.3	513.16	565.49	606.7
통화증가율 (%)	10.2	11.7	13.2	12.4	16.8
주가지수(NSE, 1996=100)	1362.9	2737.6	2945.58	3726	4102
연평균 환율	79.5	75.93	79.28	75.55	72.10
은행간 금리 (%)	8.8	0.8	9.41	7.9	8.12

자료원1 : 케냐 통계청 발행 Economic Survey 2006

자료원2 : 케냐 중앙은행 발행 Monthly Economic Review 2006. 5월호

☐ 2006년 6월 기준 최근자료

노동통계

지표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제활동인구 (천명)*	6,409.8	6,866.8	7,325.7	7,822.8	8,281.7
월평균임금 (미불)	211	242	284	322.9	397.5
임금상승률 (%)	14.9	14.9	13.0	16.5	23.3

주1 : 경제활동인구 = 임금노동자+자영업(가족포함)+비공식취업인구

주2 : 추정자료

자료원: 케냐 통계청 발행 'Economic Survey 2006' - 2006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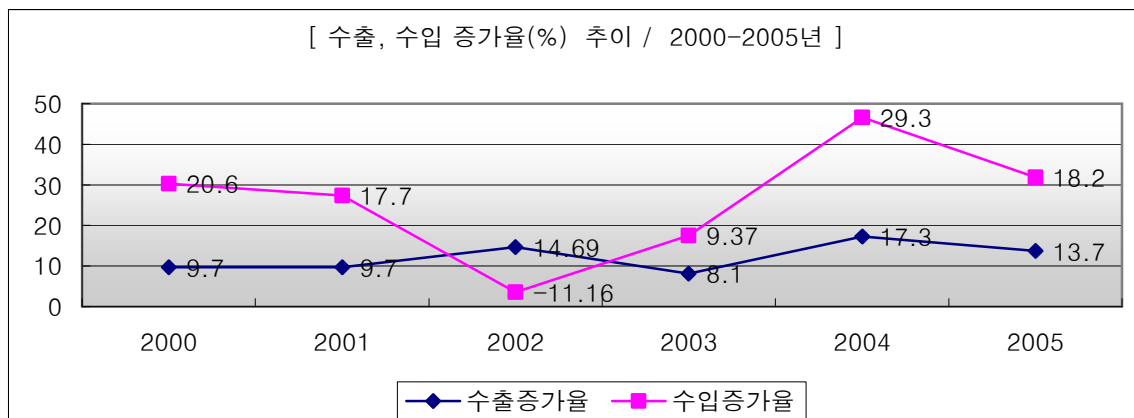
12. 무역통계

가. 무역수지

만성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는 케냐 경제는 수입의존도가 수출에 비해 높은 편인데 2004년에는 케냐실링의 평가절하와 함께 수입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 되었다. 이는 주로 수출에 비해 수입제품에 대한 빠른 국내소비로부터 기인한다. 선진국에 비하면 초보 단계 수준의 산업발달로 자체적으로 소비재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수입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반면, 수출의 증가는 완만하다. 원예, 차, 철강, 커피, 소다회가 총수출의 60%를 차지한다. 천연석유, 석유제품, 산업기계, 자동차 등이 총수입의 48.9%를 차지한다. 2005년 무역량은 2004년도 23.3%의 증가율에 비해 15.95%로 현저히 하락하였다. 2005년의 수출증가율은 13.7%이며 수입증가율은 18.2% 이다. 2004년의 무역수지 적자는 1,884백만 달러에서 2005년 1,898백만불로 적자 폭이 약간 증가되었다.

(단위: 백만불, %)

	2003년		2004년		2005년	
	무역량	증가율	무역량	증가율	무역량	증가율
수출(FOB)	2412	8.1%	2709	17.3%	2807	13.7%
수입(CIF)	3711	9.37%	4539	29.3%	4705	18.2%
수지	-1300		-1884		-1898	



자료원: 케냐 정부 발행 'Economic Survey 2006' (2006년 8월 기준 최근 자료)

나. 국가별 수출입

1) 주요 수출국별 통계

(단위 : 백만불)

국 가	2004년	2005년	2006년
우간다	408	486	512
영국	272	286	317
네델란드	189	217	250
탄자니아	183	212	267
도미니카	74	117	107
르완다	75	81	91

2) 주요 수입국별 통계

(단위 : 백만불)

국 가	2004년	2005년	2006년
남아공	311	450	572
U.A.E	471	481	908
미국	180	188	567
영국	258	390	803
사우디	313	464	328
일본	253	311	299

3) 수출국가별 수출비율 통계 (2006년 기준)

국 가	우간다	영국	네델란드	탄자니아
비율 (%)	16	9.9	7.8	8.3

4) 수입국가별 수입비율 통계 (2006년 기준)

국 가	U.A.E	미국	영국	남아공
비율 (%)	15.2	9.5	13.4	9.5

자료원: 케냐 중앙은행 발행 Monthly Economic Review 2006. 5월호-2006년 8월 기준 최근자료

다. 품목별 수출입 통계

상품별 수출

(단위 : 백만불)

품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원예	252	356	480	416	433
차	438	432	412	454	561
커피	94	82	82	87	129
소다회	25	26	31	40	51
철강	47	52	53	95	117
어류	49	52	53	52	61
플라스틱	33	30	34	39	57

상품별 수입

(단위 : 백만불)

품 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원유	400	301	335	580	1340
정제유제품	331	277	520	543	780
기계류	483	320	431	549	1780
철강	152	140	165	268	279
차량	185	181	236	307	334
의약품	91	109	128	146	830

자료원 : 케냐 통계청 'Economic Survey 2006' (2006년 8월 기준 최근자료)

라.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

교역통계 총괄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1	46,058	-2.2	787	-60.1	-45,271
2002	45,008	-2.3	1,941	146.5	-43,067
2003	48,599	8	1,725	-11.1	-46,874
2004	61,861	27.3	2,428	40.8	-59,433
2005	71,039	14.8	4,360	79.6	-66,679
2006	80,176	433.7	922	54.9	-79,254

주 : 2006년은 1-3월까지 통계치임.

수출통계

(단위 : US\$,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5 년		2006 년 1-3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1,038,885	14.8	80,176,201	433.7
1	133	석유제품	1,844,707	40.5	44,712,267	24,371.70
2	741	자동차	8,049,114	270.5	6,511,482	1,072.60
3	214	합성수지	20,178,888	15	5,886,805	13.9
4	725	건설광산기계	1,426,960	364.6	4,583,984	16,552.70
5	613	철강판	659,208	1,273.20	3,555,308	3,270.00
6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2,858,455	-13	2,586,908	607.4
7	228	정밀화학원료	4,386,130	109.6	1,745,543	56.4
8	626	아연제품	3,696,357	-43.9	1,338,697	6.6
9	320	고무제품	3,754,278	43.2	1,192,075	22.4
10	241	시멘트	0	-	945,750	-
11	252	종이제품	889,919	-21.7	755,654	77
12	721	섬유및화학기계	1,363,506	51.7	541,847	184.6
13	824	가정용회전기	1,270,025	-6.6	470,792	9.3
14	621	알루미늄	391,598	28.8	470,096	-
15	224	표면활성제	1,300,896	212.9	367,650	29.3
16	990	기타잡제품	372,373	381.9	349,749	2,415.10
17	823	냉장고	741,786	-27.9	331,913	68.6
18	813	컴퓨터	266,526	17.9	311,794	693.1
19	310	플라스틱 제품	1,285,881	-22.7	311,171	-22.9

수입통계

(단위: US\$,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5년		2006년 1-3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360,453	79.6	922,081	54.9
1	252	종이제품	2,313,472	151.7	341,651	94.2
2	621	알루미늄	728,086	1,029.10	205,929	82.5
3	831	반도체	285,031	-	78,338	-58.3
4	622	동제품	296,232	36.2	71,993	-
5	15	기호식품	163,840	1,268.50	61,497	149.7
6	331	가죽	16,237	5,537.90	36,473	-
7	23	축산부산물	20,835	-55.5	31,500	-
8	512	신발	69,369	631	24,833	77.1
9	790	기타기계류	344	-93.8	23,430	6,711.10
10	12	산식물	28,833	16	14,376	668
11	243	유리제품	19	-	11,500	-
12	225	사진영화용재료	0	-	6,663	-
13	569	기타완구	0	-	5,247	-
14	833	수동부품	0	-	2,995	-
15	542	취미오락기구	0	-	2,860	-
16	31	목재류	4,112	-80.8	1,207	-0.8
17	751	기계요소	26,776	-	410	-
18	842	정전기기	29,689	-52.2	385	-96.5
19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62	-	36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www.kotis.net (2006년 8월 기준 최근 자료)

13. 투자통계

가. 케냐 투자 수지통계

케냐의 대외 투자진출은 미미한 실정이며, 주로 인접국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 제조업 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가장 큰 해외 진출기업은 Kenya 맥주인 Tusker사의 우간다 생산설비이다. (기타 통계는 케냐 통계청 자료 미발표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

나.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2005년 중 투자유치 기준)

1) 투자금액순 상위 10개국

순위	국가별	투자건수	총금액 (백만불)
1	중국	12	15.5
2	이스라엘	1	10.6
3	인도	7	10.25
4	수단	2	8.91
5	터키	1	8.81
6	영국	12	5.74
7	네덜란드	2	4.42
8	남아프리카공화국	7	1.66
9	우간다	2	1.43
10	이탈리아	2	0.98
	*케냐	36건	38.67
총계	29개국	68건	81.93

2) 산업분야별 상위 10개분야

순위	분야	세분	건수	금액 (백만불)
1	제조업	의류	0	0
2	제조업	식료품	7	13.91
3	제조업	의약품	4	2.32
4	제조업	기타	11	5.67
5	무역업		6	4.14
6	관광 및 호텔		7	0.78
7	IT관련산업		4	14.55
8	유통업		9	13.02
9	건축업		1	8.81
10	환경	재생	2	0.56

자료원: 케냐투자청 2005년 투자유치 통계자료

다. 한국과의 투자통계

1)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치

(단위 : 건, US\$ 천, 연간누계)

구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 케냐진출 (신고기준)	1	500	0	0	1	800	3	3,090	0	0
(투자기준)	2	292	0	0	0	0	3	192	0	120
우리나라유치	-	-	-	-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 케냐투자청 2005년 통계자료

회사명	투자분야	투자금액	투자유형
Sun-City Construction	알미늄 조립공장	19만불	단독
K.P.Suppliers Co. Ltd	산업자재 제조수출	15만불	단독
Hwan Sung Industries (K) Ltd	주방용 가구 제조판내	312만불	단독
Emstone Enterprises Ltd	식료품 가공제조	34만불	합작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아프리카의 동부 인도양에 연하여 적도가 가로 지르고 있으며, 열대 해안 지대로부터 사바나 초원 지대, 고원 및 반사막 지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원이며 서부 지방은 강우 풍부, 북부 지방은 건조, 해안 지방은 열대성 고원 다습한 반면 고지대는 저습 냉량하다.

가. 지역별 기후

케냐의 지역별 기후는 다음과 같다.

- 서부 케냐(Western Kenya): 고도 1,157m, 강우량 최저 60mm-최고 200mm, 최저 기온 14-18℃, 최고 기온 30℃-34℃, 덥고 연중 강우가 계속되며 열대림 보유
- 리프트 계곡 및 고원(Rift Valley-Highlands): 고도 1,661m, 강우량 최저 20mm - 최고 200mm, 최저 기온 10℃-14℃, 최고 기온 22℃-26℃, 온대성 기후로서 3-5월 및 10-12월 년 2회의 강우기, 농업 재배 지역으로 적합
- 북부 및 동부 케냐(Northern and Eastern Kenya): 고도 128m, 강우량 최저 0-80mm, 기온 최저 22℃, 최고 34℃, 반 사막 및 사막 기후로서 목축업 지대

- 해안(Coastal Belt): 고도 17m, 강수량 최저 20mm - 최고 240mm, 기온 최저 22℃ - 최고 30℃, 고온 다습하며 해변가 지역은 농업에 적합
- 좀더 구체적인 정보는 케냐 관광 진흥청 (Kenya Tourist Board)에서 관리하는 영문 홈페이지 (<http://www.magicalkenya.com/default.nsf/info1/kenyainfoopendocument&l=1>)를 참조

나. 출장 시 복장

나이로비 지역에 출장을 오는 경우, 고지 기후 특성으로 아침 저녁이 통상 쌀쌀한 점을 감안, 양복의 경우 6-9월 중 춘추복, 기타의 경우 춘하복 또는 춘추복이 적당하다. 평상복은 반팔과 긴 팔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6시간으로 한국이 24:00시일 때 케냐는 아직 18:00시 이다.

나. 근무시간

케냐 관공서 및 일반 직장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17:00이며, 이외 은행, 우체국, 식당, 상점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 은행: 통상 09:00~14:00시 (토요일 오전 09:00~13:00, 일요일 휴무)
- 우체국: 통상 09:00~17:00시 (토요일 오전 09:00~13:00, 일요일 휴무)
- 식당: 통상 12:00~22:00시 (토.일요일 동일)
- 상점: 통상 10:00~17:00시 (토요일은 평일과 동일, 일요일 휴무)

3. 도량형

길이는 미터법(m), 야드법(yd) 혼용, 면적은 주로 피트(feet)법, 유체량은 리터법, 무게는 Kg을 상용하고 있으며, 복사 용지는 A4, A3등 유럽 사양을, 파일용 바인더도 3공 바인더 대신 2공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우리나라 국민이 케냐 입국 시 입국 비자가 요구되며, 입국 시 3개월 체류가 가능한 관광 비자를 공항에서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 비용은 싱글비자 50불, 복수비자(1년유효)는 100불이며, 장기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케냐 이민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1-2년짜리 비자를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2-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나 발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비공식 비용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나. 비자발급처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한국 케냐 명예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동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 케냐 명예 총영사관
- 주 소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186-210번지 파라다이스 본사 빌딩 1층
- 전 화 : 02) 2277-2127
- 팩 스 : 02) 2271-2130
- 담 당 자 : 안진선 (e-mail : ilovekenya@paradise.biz)
- 업무시간 : 월~금 (09:00 ~ 12:00 AM; 01:30 ~ 04: 00 PM) (국, 공휴일 및 임시 휴관일 제외)
- 홈페이지 : <http://www.ilovekenya.com/kor/>

다. 출입국 절차

케냐 입국 시 비자 외에도 황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인 Yellow Card 제출을 요청 받을 수도 있으며 한국인인 경우 반드시 Yellow Card 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체류자, 노약자, 자주 방문하는 여행객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입국 신고 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 검사대를 거치며 샘플이나 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는 간혹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샘플임을 입증하면 통과 시 문제가 없으나 간혹 관세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라. 출입국시 유의 사항

취업 및 파견 근무를 위한 장기 체류의 경우 단기 입국 후 이민국으로부터 Work Permit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

마. 예방접종

황열병주사는 가능하면 한국을 출발할 때 비행 탑승 전 10일 이전에 인천공항 내의 예방접종실에서 미리 받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인천공항 정부합동청사 민원실(Tel: 032-740-2703)에 예약이 필수적이다. 접종 후 노란카드를 발급하는데 이 카드는 여권과 함께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

- 접종 장소: 인천 국제공항 내 정부 합동 청사 1층 국제 검역소 (Tel: 032-740-2701), 국립의료원
- 접종일: 출발 최소 10일전까지
- 비용 : 접종비 10,000원, 증명서 발급비 500원
- 유효기간 : 접종 후 10년간 유효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출발 1주일 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복용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주 1회 정도의 복용으로 예방 가능 하다.

케냐를 출국한 이후라도 감기와 비슷한 발열, 오한, 구토 등의 증세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말라리아균의 감염 여부부터 검진해야 하며, 출국 전 현지에서 말라리아 약을 구입하여 휴대함도 필요하다.

5. 환율/환전

가. 평균 환율

1999년부터 4년간 케냐 실링화가 계속 절하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2003년에 들어서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2004년 다시 절하 되었으며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다시 강세를 보였다.

년도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평균 환율	75.93	79.28	75.55	72.10

주 : 2006. 8. 31 기준 환율: US\$ 1 = Ksh 72.70

케냐 정부 은행(Kenya Commercial Bank)의 공시 환율은 <http://www.kcb.co.ke/forex/rates.asp>를 참조하기 바람. (미화, 일본화 및 인근 아프리카 총 16개국의 환율을 확인할 수 있음.)

나. 환전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이외에 Forex라 불리는 외환전문소가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환전할 수 있다.

환전은 외환전문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환전 시 여권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고, 남은 현지화는 달러로 역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의 경우 T/C 보다는 현금이, 현금보다는 T/T가 환율에 유리하다.

□ 주요 환전소

- Orion Forex Bureau
 - 전화: 254-2-337189, 213910,
 - 팩스: 254-2-214316
 - 주소: Merchantile House, Loita Street, Nairobi
- Central Forex Bureau Ltd.
 - 위치: Posta Sacco Plaza
 - 전화: 254-2-226777, 331443
- Maxfair Forex Bureau Ltd.
 - 위치: Standard 빌딩
 - 전화: 254-2-226212, 228842
- Nairobi Forex Bureau Ltd.
 - 위치: Muindi Mbingu Street
 - 전화: 254-2-244767
- Nairobi Bureau De Change Ltd.
 - 위치: 나이로비 국제공항 내 Unit 2
 - 전화: 822884, 820777

이외에도 30여 개의 환전소가 산재함.

6. 물가정보

□ 도시 : 나이로비(케냐)			- 환율 : US\$1 = Ksh7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 100%)	800	7.1	구두(1켤레, 소가죽)	266.6
1.2	넥타이(1개, 실크 100%)	6.4	7.2	치약(150g, 1개)	2.3
1.3	와이셔츠(1벌, 면 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5	7.3	칫솔(1개)	3.1
1.4	양말(1켤레, 면 100%, 현지산)	2	7.4	면도기(1세트)	7.3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00	7.5	건전지(1세트, 1.5V AA)	3.33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3.3	7.6	화장지(1통, 300매)	1
1.7	청바지(Levi's)	60	7.7	비누(1개)	0.33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3.3	8.1	복사용지(A4, 250매, Xerox)	6.6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4	8.2	볼펜(12개)	2.66
2.3	닭고기(1KG, 생닭)	4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3.07
2.4	쌀(1KG, Short Grain)	1	8.4	공CD(1통, 12개입, 700MB)	1.33
2.5	밀가루(1KG)	0.5	8.5	휴대폰(NOKIA 6230)	300
2.6	설탕(1KG, 백설탕)	1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2.67
2.7	계란(10개)	0.9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 1회설치)	400
2.8	감자(1KG, 현지산)	0.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980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1.1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 (2000cc, 기본, A/T, 현대 투산)	33,333
3.1	고추장(1Kg)	12	9.2	엔진오일(1L)	12
3.2	된장(1Kg)	7	9.3	휘발유(1L)	1.04
3.3	라면(1개)	1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60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등)	11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667
3.5	불고기(1인분, 200g)	14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4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11	10.2	시내버스(1구간)	0.4
	4. 기호식품		10.3	택시(5Km 기본)	6
4.1	햄버거(1개)	3.6	10.4	택시(추가요금/Km)	1.33
4.2	피자(1판)	10.7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8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66.7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3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1.25
4.5	담배(수입산, 1갑)	1.6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13
4.6	위스키(1병, 750ml)	49.3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16

4.7	커피(1병, 175g)	4.6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2.65
	5. 주택(150㎡)		11.6	국내우편 (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33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850	11.7	국제우편(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9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40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80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3.5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2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없음
6.1	TV(29인치, 칼라, 범용)	933.3			
6.2	VTR(6헤드, 범용)	266.6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33.3			
6.4	전자레인지	200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020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627			

□ 도시: 나이로비(케냐)			- 환율 : US\$1 = Ksh7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66.7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4,00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없음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급여대비%, 연간)	5.3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2,25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1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4,25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6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5,120	18.6	연간국경일	11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45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없음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4,325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일
13.3	골프공(1타)	42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650	19.1	법정최저자금	133,334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2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4.5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없음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치과제외)	2,133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3.3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3.3		※ 19.2 총투자금액의 20%	
14.4	치과(스켈링, 1회)	20		※ 19.3 10년동안 면제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3.8		※19.5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상이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14			
15.2	한국신문(1개월)	없음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67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3.2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1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1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5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45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3.3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9.3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800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666.7			

7. 교통/통신

가. 교통

1) 국제

케냐 내 취항하는 국제항공으로는 British Airways, SN Brussels, Ethiopian Airlines, Egypt Airlines, South Africa Airways, Emirates Airlines, Qatar Airlines (2006년 1월 부터 취항), Kenya Airways와 코드쉐어를 하고 있는 KLM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항공예약은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이용하며, 해당 항공사에서 직접 예약도 가능하나 가격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2) 우리나라와의 교통

우리나라와는 직항 노선이 없어 유럽, 인도(뭄바이), 중동, 남아공 등을 경유한 항공노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항공 요금은 왕복기준 통상 1,300-1,500불 내외 정도이다.

3) 주요항공노선

- Emirates Airlines : (나이로비-두바이 구간은 매일 출항) (요금 1,500불 내외)
 - 나이로비-두바이-방콕-인천
 - 나이로비-두바이-일본-인천
 - 나이로비-두바이-인천
- Cathay Pacific : (요금 1,400불 내외)
 - 나이로비-요하네스버그-홍콩-인천 (나이로비-요하네스버그 구간 Kenya Airways 이용)
 - 나이로비-두바이-홍콩-인천 (나이로비-두바이 구간 Kenya Airways 이용)

- Kenya Airways: (요금 1,400불 내외)
 - KLM과 코드쉐어하고 있으며 2003년 7월이후 나이로비-방콕간 신 항로를 개설함.
- QATAR항공 (요금 1,300불 내외)
 - 2006년 1월에 첫 취항함.
 - 나이로비-도하-인천으로 연결되며 요금은 1,300불 수준임

나. 주재국내 교통

버스, 승합차(MATATU), 택시 등이 운행되고 있으나 혼잡하고, 차량이 노후화되어 불결 하므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큰 호텔 주변에는 깨끗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으나 비교적 비싼편이다. (시내 30분 이내 단거리 요금 : 약 12불) 나이로비-몸바사 구간 에는 기차 (침대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1.2.3등으로 구분되며 야간운행)가 운행되고 있어 편리하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교통수단별 요금표-2006년 1월 기준

교통수단	행선지(구간)	실링	미화
Matatu	나이로비 시내	20/=	\$0.3
	나이로비 시외	30/=	\$0.4
	나이로비-Thika타운	50/=	\$0.7
	나이로비- Athi River 공단	50/=	\$0.7
Domestic Flights (왕복)	Nairobi - Mombasa	11,555/=	\$154
	Nairobi - Kisumu시	11,130/=	\$148
	Nairobi - Masai Mara공원		\$207
	Nairobi - Amboseli공원		\$167
Railways (왕복)	Nairobi - Mombasa	6,320/=	\$84
	Nairobi - Kisumu	6,000/=	\$80

나이로비에서 인근국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여행할 경우는 Kenya Airways가 매일 2-3회 운항 하고 있어 가장 이용이 용이한 편이며 우간다의 경우는 왕복 340불, 탄자니아는 390불이 소요된다.

다. 주재국내 및 국제통신

주재국의 통신 및 전화사정은 아프리카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매우 뒤떨어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비용도 무척 비싸다. 일반전화 이용 시 한국통화비용은 1분당 2불5센트가 기준이나,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 시 1분당 10불-15불씩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불편하나 전화국에서 국제전화 카드를 구매하여 국제전화 가능 공중 전화를 이용하면 다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내 중심가에 간혹 공중전화 시설이 있으며 사용 요금은 시내구간인 경우 3분에 3실링이다.

- 한국호출 : 000+82+지역번호+전화번호 (000은 국제전화 번호, 82는 한국 국가번호)
- 한국에서 나이로비 호출 : 국제전화번호(예:001)+254(케냐)+20(나이로비)+현지 전화 번호

출장 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는데, 휴대폰은 공항에서 바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점은 Bon Voyage이며 약 67불의 Deposit (폰 반납시 되받음)과 27불상당의 카드를 지불하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1일당 사용료는 약 2불에 불과하며 통화료는 27불을 초과한 경우 폰카드를 구입하여 충전하면 된다. 그 외 특별한 가입절차는 없다. 폰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3불, 6불, 12불짜리가 있다. 참고로, 이곳 휴대폰은 한국의 CDMA 방식이 아닌 유럽의 GSM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한국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로밍서비스도 불가하다.

라. 우편

케냐 내 국내우편료는 기본 10g당 6실링, 서울까지의 우편료는 25실링 정도이다. 특히 우편 배달의 경우 주재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각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Post Box)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우편함을 개설 이용하는 경우도 관공서, 회사, 자영업자 등 일정수준 이상 생활자이며 하류층 일반서민은 우편함(주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편물 수취는 이용자가 직접 수발신해야 하며, 소포는 통상 보관료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특사우편으로는 DHL, EMS, TNT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류의 겨우 500그램 기준으로 D.H.L은 3,885실링 (미화 52불), EMS는 2,204실링(미화 29불), TNT는 4,023실링 (미화 54불) 수준이며, 현지 우편시스템이 열악하고 중요한 문건들은 자주 분실되는 경향이 있어 특사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특히 카탈로그 등의 발송 시 세관에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인보이스상 금액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8. 호텔/식당

가. 일반 호텔

케냐는 관광지로 5성급 호텔부터 모텔수준까지 다양한 호텔이 있다. 대부분 케냐 전역으로 치안이 불안하여 낮에도 강도가 빈발하며 특히 밤에 외출은 삼가야 한다.

□ 무역관 거래 주요 호텔정보

○ Grand Regency Hotel (5성급)

- 소재지 : 시내 중심가(무역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
- 무역관 특별 우대요금 : 숙박비(싱글 1박) : US\$ 115 (세금포함, 조식제외)
· (정상요금: 싱글- US\$ 256; 트윈 - US\$ 307)
- 전화: 254-2-211199 팩스: 254-2-217120
- 전자메일 : gregistry@africaonline.co.ke

○ Nairobi Serena Hotel (5성급)

- 케냐 최고급 호텔.

- 소재지 : 시내 외곽 (무역관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
- 숙박비(1박) : 아래 정상요금으로 투숙가능 (무역관 할인요금 없음)
 - (정상요금: 싱글-US\$ 280; 트윈 - US\$ 325)
- 전화: 254-2-313800 팩스: 254-2-725184
- 전자메일: nairobi@serena.co.ke

○ Safari Park Hotel (5성급)

- 한국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 호텔('60년대 전낙원씨 설립)
 - 무역관은 물론 대사관 및 교민회 등에서 연말 송년회, 볼거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소재지 : 시내 외곽지역 (무역관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
- 무역관 특별 우대요금 : 숙박비(1박) : US\$ 120 (세금포함, 조식제외)
 - (정상요금: 싱글-US\$ 150; 트윈 - US\$ 170)
- 전화: 254-2-862222 팩스: 254-2-802477
- 전자메일: safariht@africaonline.co.ke

○ Six Eighty Hotel (3성급)

- 한국 기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
- 소재지 : 시내 중심가 (무역관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숙박비(1박) : Single \$50, Twin \$55
 - (정상요금: 싱글-US\$ 80; 트윈 - US\$ 90)
- 전화: 254-2-332680 팩스: 254-2-332908
- 전자메일: info@680-hotel.co.ke

○ 그 외에 시내 중심에 있는 Hilton, New Stanly 호텔도 이용 가능하다.

- 호텔정보 www.nationaudio.com/News/DailyNation/whatson/current/hotels.htm를 참조

나. 식당

케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양식, 한식, 일식, 중국식, 이태리식 등 다양한 종류의 식당이 있다. 패스트 푸드는 남아공에서 진출한 Wimpy, Steers등의 일부 체인점이 있어 간단한 점심도 가능하다.

대부분 서양식 식사는 1인당 12불 전후이다.

현지 고유 음식은 일반인의 경우 우갈리(옥수수 가루를 죽같이 쑀 음식)와 케익을 곁들여 먹으며 고기류는 양이나 염소를 바비큐식으로 요리한 냐마초마 (Nyama Choma)가 유명하다.

○ 일반음식점

- INTERCONTINENTAL HOTEL (양식)
- HILTON HOTEL (양식)
- SERENA HOTEL (양식)
- SAFARI PARK HOTEL (양식, 중국식, 아프리카식, 이태리식, 일식)
- NAIROBI SAFARI CLUB (양식)
- AKASAKA (일본식)
- DRAGON PEARL (중국식)
- JAPANESE CLUB (일본식)
- TUNA TREE (이태리식)
- RED BULL (양식)
- MISONO (일본식, 한국인경영)
- FURUSATO (일본식, 한국인경영)
- TOKYO (일본식, 한국인경영)
- MANNA (한식, 한국인경영)
- NEW SEOUL GARDEN (한식)
- PANDA (중국식)

○ 기타 식당정보는

www.nationaudio.com/News/DailyNation/whatson/current/restaurants.htm 참조.

9. 관공서 관행

행정체계는 과거 영국식민지 시절부터 제도나 형식을 영국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케냐의 관공서는 2002년까지 이른바 대표적인 권위주의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었다. 대부분 민원서류 및 행정처리가 매우 늦고 전산화가 뒤져 행정중복, 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서비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급행료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키바키 대통령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 근무자들의 대민 서비스 교육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 및 감독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잔존 하는 급행료 제도들이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참고로, 관공서는 주로 매일 오전 10:00~10:30분까지 Tea Break (차를 마시는 시간)라는 관행이 있어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며, 점심시간(13:00~14:00)에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며, 특히, 매주 금요일은 주로 오전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급한 일들을 처리할 때는 이런 시간대를 피할 필요가 있다.

10. 공휴일

가. 2006년도 공휴일 일정표

New Year 's day (새해)	1월 1일
Good Friday	4월 7일
Easter Monday	4월 10일
Labour Day (노동절)	5월 1일
Madaraka Day (정부수립일)	6월 1일
Moi Day (Moi대통령 취임기념일)	10월 10일
Kenyatta Day (초대대통령 기념일)	10월 20일
Independence Day (Jamhuri Day, 독립기념일)	12월 12일
Christmas (성탄절)	12월 25일
Boxing Day 12월 26일	12월 26일
*Idd Ul Futr (라마단 금식종료일)	유동적

○ 참고

- 법정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월요일을 공휴일로 함 (1월 2일 등)
- 라마단 금식 종료일의 경우는 이슬람 기준력에 따르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출장 지양기간

- 부활절 주간(4월 중) 및 연말 연시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 의복준비

케냐는 몸바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1,500미터의 고지로 대부분 일교차가 다소 심하여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반면, 낮에는 햇살이 따갑고 기온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적도밀에 위치하여 연중 기온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나 몸바사를 제외한 고지대의 경우 7-9월 중에는 춘추복, 나머지기간은 하복 및 춘하복이 적당하다. 평상복은 반팔과 긴팔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낮은 햇살이 강해 썬크림 등을 바르는 게 좋다. 몸바사지역은 열대 지역으로 하복을 준비하면 된다.

나. 전기규격

220/240V, 50Hz, 삼상이며 전압이 불안정하여 가전제품 등 모터가 포함된 제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주로 고가 가전제품은 Surge Protector나 컴퓨터용 전압안정기 또는 UPS를 사용한다. 면도기의 경우 일부 호텔에서 110/220V 겸용 콘센트가 있기도 하다. 전원 플러그는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다목적 콘센트를 구입해야 한다 (유럽과 유사).

다. 여행여건

1) 치안

케냐의 치안은 날로 악화되어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여행객에 대한 권총강도도 간혹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야간에는 외출을 삼가해야 하고 현금 등은 과도하게 지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혼자보다 그룹으로 이동 시 보다 안전하다. 최근 대사관 직원도 권총강도에 납치되어 차량 등을 탈취당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고 주택지를 침입한 권총강도가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강도를 만난 경우 상대를 해치기 보다 금품탈취가 목적이므로 절대 반항하지 말아야 안전하다.

2) 택시

가급적 호텔택시를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주소가 P.O. BOX로 되어 있어 가능한 방문하는 사무실이나 지역의 실제위치 및 주소를 확인하여야 찾기가 편하다. 특히, 주요 건물 이름과 거리이름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료는 정액제가 아니므로 반드시 승차 에 가격을 흥정한 후 탑승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의 기본요금은 200실링 부터 시작된다.

3) 응급

응급 시에는 가능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의료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AIDS가 창궐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지역을 커버하는 경비행기 응급수송시스템으로AAR (Africa Air Rescue)서비스가 있으며, 자동차사고 등 위급 시를 대비하여 가입을 권장하며 연간 가입비는 100-200불 정도이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종합병원응급실
 - NAIROBI HOSPITAL : TEL.722160 EXT. EMERGENCY
 - AGA KHAN HOSPITAL : TEL. 740000
- 앰블런스 요청
 - ST. JOHN AMBULANCE : TEL. 22396/24066
 - FLYING DOCTORS SERVICE : TEL. 501301/501280
- 야간약국
 - KENMART PHARMACY IN KENYATTA HOSPITAL 726148
 - NAIROBI HOSPITAL
 - AGA KHAN HOSPITAL

이외에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어 가능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기증세가 있는 경우 즉시 말라리아검사를 실시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

4) 팁관행

공식적으로 팁관행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공항, 호텔의 경우 짐 한 개당 1불 이내 혹은 현지화 50실링정도가 적당하다. 식당에서는 약 음식값의 2-3% 정도가 적당하며 팁은 전체

금액이 3불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5) 식수

케냐의 수도물은 식수로 부적격하여 반드시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살모레나균에 의한 급성이질 등 현지수인성 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식당 및 호텔에서라도 미네랄워터를 별도 주문해야 하며 1리터당 평균 2-3불 정도이다. 슈퍼에서는 평균 1불 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

6) 이발소

이발은 한국보다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이며 주요 고급 호텔에 이발소가 있고, 현지 인도인 이발사의 경우 현지화 400실링(미화 약5불) 전후이며, 한국미용사의 경우 600실링 (미화 8불) 정도이다.

7) 구두닦이

시내 거리 및 호텔로비(간혹) 구두닦이들이 있으며 약 50실링(약 미화 0.7불) 전후이다.

라. 쇼핑

1) 물가

케냐의 경우 외국인의 생활물가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서울 대비 물가수준은 공산품의 경우 2~3배 비싼 편이다. 이는 높은 물류/금융비용, 관세 (35% 이상 및 특소세), 부가세 18% 등에 기인한다. 호텔 내 식사와 경우 1인당 20불선이며 포도주 등을 곁들인 경우 30불 이상 이다.

2) 쇼핑장소

쇼핑몰은 시장여건상 발달되지 않았으나 나이로비지역에 주요 쇼핑몰로 3개 정도가 있고 백화점은 없다. 주요쇼핑몰은 Sarit Centre, Yaya Centre, Village Market 등이다. 최근 체인형 슈퍼마켓이 대형화되는 추세로 많은 수입상품들이 이들 체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주요 슈퍼마켓 체인은 Uchumi와 Nakumat등 2개사가 있다. 이외에 현지인들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시장으로 City Market과 Hawkers Market이 있다.

3) 특산품

케냐의 경우 과거에 상아 등이 거래 된 바 있으나 현재는 거래가 금지되었다. 이외 주요 특산품은 케냐커피(블루 마운틴 브랜드 커피가 한국에 진출하고 있음) 및 홍차, 흑단장신구(마사이족 형상 등) 및 조각, 귀금속, Soft Stone 조각물, Batik (아프리카풍속을 캔버스 천에 그려낸 그림으로 유럽인이면서 아프리카인과 결혼한 Heidi Lange의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함) 등을 들 수 있다.

□ 유용한 웹사이트

- 케냐웹 : <http://www.kenyaweb.com>
- 케냐역사, 문화(시설) 배경, 가볼 만한 곳, 영화관 등 종합정보수록

- Africa online사 홈페이지 : <http://www.africonline.com>
 - 아프리카 전반적인 정보, 국별 정보, 문화, 시사정보 등을 수록

12. 유용한 연락처

가. 현지 관공서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상세정보
Ministry of Finance	T:(254-20)252299 F:(254-20)219365	Mr. David Mwiraria (Minis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t'n'l Co-operation.	T:(254-20)318888 F:(254-20)344333	Mr. Ali Makwere (Minister)
Ministry of Home Affairs & National Heritage.	T:(254-20)318727 F:(254-20)240066	Hon. Moody Awori (Minister)
Ministry of Trade & Industry	T:(254-20)315049 F:(254-20)310983	Dr. Mukhisa Kituyi (Minister)
Department of Defense Headquarters	T:(254-20)2721100 F:(254-20)2725854	Mr. Joseph Kibwana (Chief of General Staff)
Attorney-General	T:(254-20)227461 F:(254-20)2720263	Mr. Amos Wako
Ministry of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T:(254-20)252299 F:(254-20)218475	Prof. Anyang' Nyong' o

나. 경제단체

기관명	전화/팩스번호	상세정보	
Industrial & Commercial Development Corporation	T:(254-20)229213 F:(254-20)317456	Mr. David Ole Sankoni Chairman	icdc@icdc.co.ke
Keny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254-20)220867 F:(254-20)318367	Mr. David Githere Chairman	kncci@swiftkenya.com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T:(254-20)3746005/7 F:(254-20)3746030	Mr. Manga Mugwe Chairman	kam@africaonline.co.ke
Kenya Bureau of Standards	T:(254-20)502211 F:(254-20)609660	Eng. John Masila Chief Executive	kebs@users.africaonline.co.ke
Kenya Ports Authority	T:(254-41)312211 F:(254-41)311867	Mr. Brown Ondego Managing Director	
Investment Promotion Centre	T:(254-20)221401 F:(254-20)243862	Julius K. Kipng' etich Managing Director	info@investmentkenya.com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T:(254-20)2712800-6 F:(254-20)2713704	Mr. Albert Gumu Chief Executive	info@epzkenya.com
Export Promotion Council	T:(254-20)228534-6 F:(254-20)228539	Mr. Matenda Wabuye Chief Executive	Chiefexe@epc.or.ke
Kenya Tourism Foundation	T:(254-20)2716244/5 F:(254-20)2716246	Mr. Bernard A. Metzger Chief Executive	mcm@pobox.com

다. 한국기관

기관명	위치	전화/팩스번호	상세정보
대사관	Anniversary Tower 15층	(254-20)220000 (휴일긴급연락처- (254-735)831506)	대사(염기섭) 1964년 개설 근무시간: 월-목요일 08:30-16:00 금요일: 08:30-14:00 점심시간: 12:30-14:00, 토.일휴무
무역관	International House 2층	254-20-228928 (휴일 긴급 연락처-254- 722-518558)	관장(장병석) 1969년 개설 근무시간: 대사관과 동일 * 단, 평일 17:00까지 근무
(주)대우	International House 5층	254-20-316108/9	지사장(박경원)
재케냐한인회		254-20-2718561	회장(윤목)
한국기업	Four Seasons	254-20-2714646	
	Kenko 여행사	254-20-213122	사장(조동봉)
	Sarang Africa 여행사	254-20-2719858	사장(김충학)
	Safari Park Hotel	254-20-3633000	대표(황태연)

라. 기타 (참고: 국가코드 254, 나이로비 코드 20)

경찰기관	CENTRAL POLICE STATION	222222~5
	KILIMANI POLICE STATION	2722222
	MUTHANGARI POLICE STATION	4442800
	KASARANI POLICE STATION	803310
	MUTHAIGA POLICE STATION	3762611
	INDUSTRIAL AREA STATION	557945, 558393
화재시	FIRE STATION	222181/2
앰브런스 요청	ST. JOHN AMBULANCE	210000, 0721-225285
	FLYING DOCTORS SERVICE	501280
종합병원 응급실	NAIROBI HOSPITAL	2722160 Ext. Emergency 0722-204114/5, 0733-639301/2
	AGA KHAN HOSPITAL	3740000 - 3740012

	M.P.Shah Hospital	374-2763~7
야간약국	KENMART PHARMACY (KENYATTA병원내)	2726148
	NAIROBI HOSPITAL	2714400
	AGA KHAN HOSPITAL	3742531
차량 고장시	3S Auto (한국인 운영)	4443880
	AUTOMOBILE ASSOCIATION OF KENYA(A.A.K)	2720382/2720383
각종 고장 신고	전화 고장신고	987
	전기	주간 : 225352/3742742 야간 : 3742742/225352
	수도	2723103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MOMBASA PENNY PROFIT STORE(MPPS)	766534/762577

13. 관광명소

사파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케냐의 관광산업은 제 1의 외화 수입원이자 약 12만 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 산업중의 하나이다.

가. 시내 관광명소

- 나이로비 시내인근 관광명소로는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 뱀공원 (국립박물관 내), 민속촌인 Bomas of Kenya, Out of Africa로 유명한 Karen 박물관을 들 수 있다.

나. 시외 관광명소

1) NAKURU 국립공원

- 나이로비로부터 약 160km 지점에 위치, 도로 상태도 양호하며 승용차편으로 3시간 (편도) 소요되며 주말가족과 함께 드라이브 삼아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NAKURU 호수에 Flamingo(홍학)이 집단 서식하고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공원 내에 위치하는 호텔에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뷔페로 점심 식사도 할 수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 외국인 \$30)

2) MOUNT KENYA

- 나이로비로부터 약 250km 지점에 위치, 도로 상태가 양호하며 승용차편으로 3시간 (편도) 정도 소요된다. MOUNT KENYA 언저리에 위치한 호텔 및 방갈로 시설은 최고급으로 외국 귀빈이 주재국 방문 시에도 자주 이용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정치인, 부호들 중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 등산도 가능하며 만년설을 즐길 수 있다.(산 높이 5,199M) (1박 2일 Full Board 숙박료는 1인당 250불 수준 임)

3) MOMBASA

- 나이로비로부터 약 490KM 거리에 위치, 정기 항공노선이 매일 수회씩 운행하고 있으며 비행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자동차편인 경우 약 8-9시간(편도) 소요되나 도로 사정이 나빠 위험한 실정이다. 운행은 나이로비에서 몸바사 항발은 월, 화, 목, 금이며 몸바사에서 나이로 비행은 화, 수, 금, 일등 주 4회 운행한다. 통상 NAIROBI에

서 오후 7시, 뽀바사에서 오후 7시에 출발하므로 오후 6:30까지는 기차역에 도착해야 한다. 여행시간은 약 12시간 소요된다.

- 뽀바사는 인도양 상에 있는 KENYA 제 1의 항구도시로서 야자나무 사이로 길게 뻗은 모래사장, 맑은 물, 싱싱한 생선 등 장기간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관광지이며 고급호텔, 방갈로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 있다. MOMBASA로부터 자동차로 1-2시간 해변을 따라 여행시 낚시, 수상스키 등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곳도 많다.

4) AMBOSELI 국립공원

- 나이로비로부터 약 350km 거리에 위치, NAIROBI-NAMANGA(탄자니아 국경)까지는 도로 상태가 양호하나 NAMANGA-AMBOSELI까지는 비포장 자갈길로 승용차 이용은 불가능하며, Four Wheel Drive가 필수적이다. 소요시간은 5시간(편도), KILIMANJARO산과 정상 만년설을 구경할 수 있고 아프리카 특유의 SAFARI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지로서 평가된다. (늪과 숲 그리고 해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동물들이 집단 서식하는 곳), 여행을 통하여 여행할 경우 1박 2일, 4인 이상 단체기준 Full Board로 1인당 150-200불 수준이다. 외국인인 250불 정도이다.

5) MAASAI MARA 국립공원

- 나이로비로부터 약 380km 거리에 위치하며, 2,100m의 고지대로 세렌게티 국립공원의 초입으로 다양한 동물 사파리를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이다. 특히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는 동물이 탄자니아로부터 마사이라로 이동하여 더욱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다. 도로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자동차 여행의 경우 Four Wheel Drive가 필수적이다. 단체가 아닌 경우 매일 월슨공항에서 출발하는 경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사자 등 각종 동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모습과 마사이족 생활상을 볼 수 있다. 여행을 통하여 여행할 시 4인 이상 단체 기준, 1박 2일 Full Board로 1인당 250불 정도이다.

다. 그 외에도 가볼 만한 곳

- 사파리파크 야생동물 바베큐 식당
 - 사파리파크 내에 야생동물을 별미로 시식해 볼 수 있는 Nyama Choma식당이 있다. 사슴, 영양, 얼룩말고기, 악어고기 등의 스톱구이를 맛볼 수 있으며, 식사 중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사파리 캣' 댄스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식비는 1인당 약 미화 17불 정도이다.
- 나이바샤 국립공원
 - 나이로비에서 2시간 주행 거리이며, Boat Safari를 즐길 수 있다. 특히, Crescent Island를 거닐며 하마 등의 야생동물 사파리를 할 수 있다.

라. 사파리 관광 시 유의사항

- SAFARI 관광 시 쌍안경 또는 망원경의 휴대가 바람직하며 대부분 고지대이므로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는 점을 감안, 두꺼운 복장을 휴대함이 좋다. (사파리는 아침 새벽 6시 및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야생동물들이 어느 순간에 공격

할 지 모르므로 차량에서 뛰어 내리는 것은 절대 금지사항이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정부 교역 및 세금 관련 법으로는 수입세법 (Income Tax Act), 부가가치세법 (Value Added Tax Act), 관세법 (Custom Services Act), 교통법 (Road Transport Act)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 무역관련 제반 규정은 The Customs and Excise ACT 에서 다루고 있다.

동 법규는 주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품목에 대한 규정, 수입품에 대한 적하 및 통관, 보세창고 관련, 소비세관련, 관세규정, 밀수관련조항 등에 대한 광범위한 법규정을 다루고 있다.

동 법규원본은 케냐 관세청 홈페이지 www.kra.go.ke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제도

1) 수입신고 (IDF)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민 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수입허가제는 폐지하고 모든 수입품목에 대하여 케냐 관세청 관세과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the Import Declaration Form: IDF)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케냐실링으로 5,000실링 (미화 약 67불 수준) 또는 CIF가격의 2.75%를 적용한다.

2) 선적전 사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2005년 7월 1일부터 선적전 사전검사가 폐지되고 케냐표준청(KEBS)에서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수출자는 ISO/IEC 17025의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또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 (IFIA)에서 승인한 검증기관으로부터 미리 검사보고서 또는 승인서를 받아 케냐표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정보는 케냐표준청 홈페이지 www.kebs.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관세율

1) 일반적 적용

2005년 1월부터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법이 발효되면서 우간다-탄자니아간 수출입은 무관세 처리가 되었으며,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케냐로의 수입도 무관세 처리가 되었다. 다만,

케냐에서 우간다나 탄자니아로 수출할 경우는 즉시 무관세 처리가 되는 항목과 향후 5년간 관세율을 낮춰가도록 되어 있는 품목으로 구분되어 적용한다.

동아프리카 역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역외관세율(Common External Tariff)이 적용되는데, 원자재와 자본재(capital goods)는 0%, 반제품 및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2) 반덤핑세 및 상세관세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이 케냐 시장을 해치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판정된 경우에 반덤핑세 또는 상세관세를 부과하는데 품목별로 상이하며 반덤핑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3) 무관세 혜택적용

- 국가적으로 특수기관 및 인명에 의한 수입품
 - 대통령, 케냐군부대 및 관련기관, UN직원, 외교관, 국가무상공여기관, 신체부자유자
- 기타 무관세 품목
 - 어류, 갑각류(새우, 게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 (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씨,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

다.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1) 수입금지 품목

위조지폐 및 화폐, 풍기문란물, 합법적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국가문장(Kenyan Coat of Arms), 군사문장이 찍인 문서류, 국제적으로 관리중인 마약류, 위험한 폐기물, 수은이 함유된 비누 및 화장품, 승용차용 타이어, 모든 모조품 등

2) 특별 승인이 필요한 수입제한 품목

우편미터 스탬프 기계, 야생동물용 덧, 미 가공된 귀금속, 무기류, 오존훼손물질, 유전자 변형품, 뽕, 쌀, 상아, 비토종의 어류 및 번식용란(卵), 향정신성 약물 등

3) 식물류 수입 규제

각종 씨앗, 과일, 꽃, 꺾꽂이 등의 수입은 식물보호법, 독초법 (Noxious Weeds Acts), 농산물법 (Agricultural Produce Act)등에 의해 철저히 규제되는데, 수입을 위해서는 케냐내 KEPHIS로부터 선적전에 원산지의 식물수입허가서 (Plant Import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라. 수입쿼터

케냐는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17. 관세제도

가. 관세기준

관세제도는 89년 CCCN방식에서 HS방식으로 전환되었다. 94년 관세제도 개편으로 관세부와 범주는 8개에서 7개로 축소 되었으며, 전 품목 수입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자유화 품목이라고 자국생산품이나 사치품은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보호하고 있다.

나. 관세율

케냐는 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회원국으로 2000년 10월 이후부터 브룬디, 이집트,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르완다,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와 함께 수출자유지역 회원이 됨으로써 동 10개국간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였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국)는 2006년 1월부터 관세동맹이 발효되었으며, 내부적으로 역내 국가들은 케냐의 경제력이 너무 월등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점진적인 관세조율 과정을 겪으면서 10년 이내 완전 무관세 교역을 목적으로 하며, 역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자재에 대하여 0%, 중간재(Intermediated Products)는 10%, 그리고 일반 소비재 중 역내 회원국의 보호에 민감한 상품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

다. 수입관련 내국세

포장재료 등 수출품에 소요되는 물품 수입 시 재무부의 Export Promotion Programm Office에 의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으며, 수입 후 제 3국내 업자 판매시도 동일하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품목별로 5%에서 75%까지 병행 부과하고 음료수(알콜류 포함), 담배류, 성냥, 차량은 물품세를 20%에서 140%까지 병행 부과한다.

라. 수입관련 관세 확인방법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를 참조해야 하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정부 관세청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선적전 검사기관인 COTECNA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나 어떤 품목은 직접 재확인 필요한 경우도 있다.

- HS코드별 관세확인 => http://www.cotecna.com/online/online_KEHSCodes.asp

18. 주요인증제도

케냐는 케냐표준청에서 전반적인 품질인증제도를 전담하고 있다

참고 웹페이지는 www.kebs.org이며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 Laboratory Testing
- Standard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 Standards Information Resource Centre
- Sale of Kenya and foreign Standards
- Product certification (Issuance of the Diamond Mark of Quality)
- Handling of Consumer Complaints
- Calibration of measuring instruments
- Maintenance of Standards of Measurement
- Quality Inspection of Imports at Ports of Entry
- ISO 9000 Certification
- ISO 14000 Certification
- Training Programmes and Technical advice

특히 수출업자에 수입품 품질검사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부터 케냐표준청 기준에 적합치 않은 품목은 수입 금지 조치되었다. 수입품에 대한 통상적 검사 절차는 1. 수입품에 대한 세관원 통보 2. 수입품과 관련 서류 대조검사 3. 샘플 착출 검사 4. 수입품 통관 허가 순으로 진행되며, 표준청 기준 미달 수입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자 또는 수출자 비용에 근거 환송조치 된다.

19. 지적재산권

케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산업재산권기구(African Regional Industri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 2001년 지적재산권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제적인 재산권 보호조향을 인정하고 있다.

케냐의 지적재산법은 상표권(Trade Mark), 특허권(Patents), 실용신안(Utility Models), 산업 디자인 (Industrial Designs), 합리화모델(Rationalisation Models), 저작권(Copy-rights), 식물육종가권(Plant Breeders Rights)등 크게 7가지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각종 지적 재산권은 기술연구훈련성 (Ministry of Research, Technical Training and Technology) 산하 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관리하고 있으며, 케냐 경찰국 산하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과 관세청에서도 상기 재산권 위반에 대한 법적 제제 및 처벌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가. 상표권 (Trade Marks)

상표권(Trade Mark)은 상표법(Trade Mark Act) 제 506조에 의거 Registrar of Trade Mark (법무부산하) 등록 관리하며 기간은 신청 후 10년간 유효하다. 10년간 추가 갱신이 가능하다. 케냐 내의 상표권은 대부분 의약품, 가정용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급적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등록하는 것이 차후에 법률위반 시비 등을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는 외국인의 경우 총 금액의 20%를, 내국인의 경우는 5%를 적용한다.

나. 특허권 (Patents)

특허는 지적재산법에 의거, 규제되며 Kenya Industrial Property Office가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20년간 법적으로 유효하다. 특허 등록비용은 외국인의 경우 임시등록비로 50불이

소요되며, 최종 확정될 경우 등록비로 150불이 소요된다. 등록유지비는 2년째부터 8년까지는 300불, 9년째는 350불, 10년째는 400불, 11년째는 500불, 12년째는 600불, 13년째는 700불, 14년째는 800불, 15년째는 900불, 16년째는 1,000불, 17년째는 1,500불, 18년째는 1,750불, 19년째는 2,000불, 20년째는 2,500불이 소요되며 유지비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가 자동 취소 된다.

다. 실용신안 (Utility Models)

실용신안은 10년간 유효하며 갱신되지 아니하며 등록신청비용은 50불이며, 처음 1년간 유지비는 50불이 소요되고 매년 25불씩 추가되어 10년째는 총 유지비가 275불 소요된다.

라.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s)

취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5년씩 2번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비용은 내국인의 경우는 1,000실링(약 13.4불 수준)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40불이며, 연 유지비는 없다.

마. 저작권 (Copyrights)

케냐 내 저작권은 등록이 필요 없어 등록비는 없다. 다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제로 법적 보호를 원할 경우는 케냐 내 저작권자협회(Copyright Associations in Kenya)에 등록할 수 있다. 저작권은 50년간 유효하나 저작권 발효시기는 (1)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로부터 적용하는 경우, (2) 저작품이 일반에게 공개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3) 저작품이 방송이나 공중파를 통해 공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며, 위반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영국법 수준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관련 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원)

1. Industrial Property Bill of 2001
2. Copyright Bill of 2001
3. Trade Marks Act
4. EIU발행 Country Commerce 케냐 (2005년판)

20. 소비자보호제도

케냐 내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된 정책이 부재한 상태이다. 하지만, e-commerce가 점차 활성화 되면서 e-commerce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은 정보기술관련법 (Information Technology Bill)이 2002년부터 국회에 청원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 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도 미약한 상태이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Capital Markets Authority (CMA)

- PO Box 74800-00200 Nairobi

- Tel: (254.2) 221910 or 221869
 - Fax: (254.2) 216681; Internet: <http://www.cma.or.ke>
 - E-mail: corporate@cma.or.ke.
 - The CMA regulates equity markets and listed companies.
- **Central Bank of Kenya (CBK)**
 - P.O. Box 60000, Nairobi
 - Tel: (254.2) 226431
 - Fax: (254.2) 340192
 - Internet: <http://www.centralbank.go.ke>
 - E-mail: info@centralbank.go.ke.
 - The CBK regulates financial institutions.
-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
 - P.O. Box 30051, Lusaka, Zambia
 - Tel: (260.1) 229726
 - Fax: (260.1) 225107
 - Internet: <http://www.comesa.int>
 - E-mail: comesa@comesa.int.
- **East African Community (EAC)**
 - P.O. Box 1096, Arusha, Tanzania
 - Tel: (255.27) 2504253/8
 - Fax: (255.27) 2504255
 - Internet: <http://www.eacq.org>
 - E-mail: eac@eacq.org.
- **East African Community Customs Union**
 - P.O. Box 1096, Arusha, Tanzania
 - Tel: (255.27) 2504253/4/6
 - Fax: (255.27) 2504255
 - Internet: <http://www.eac.int>
 - E-mail: eac@eacq.org.
- **Eastern Africa Association (EAA)**
 - P.O. Box 41272, Nairobi
 - Tel/Fax: (254.2) 218317
 - Internet: <http://www.eaa-lon.co.uk>.
-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EPZA)**

- P0 Box 50563-00200, Nairobi
- Tel: (254.2) 26421/6
- Fax: (254.2) 713704
- Internet: <http://www.epzakenya.com>
- E-mail: epzahq@africaonline.co.ke.

○ **Export Promotion Council**

- P0 Box 40247, Nairobi
- Tel: (254.2) 228534 or 228538
- Fax: (254.2) 228539; Internet:
- <http://www.cbik.or.ke>
- E-mail: chiefex@epc.or.ke or manager@cbik.or.ke.
- The council offers information on export incentives and programmes.

○ **Federation of Kenya Employers**

- P0 Box 48311, Nairobi
- Tel: (254.2) 721929/48 or 720242
- Fax: (254.2) 712299 or 721990
- Email: fke@arcc.or.ke.

○ **Investment Promotion Centre (IPC)**

- P0 Box 55704, Nairobi
- Tel: (254.2) 221401/04
- Fax: (254.2) 336663
- Internet: <http://www.ipckkenya.org>
- E-mail: ipckkenya@nbnet.co.ke or info@ipckkenya.org.
- The IPC is an ideal first stop for the prospective investor in Kenya.

○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P0 Box 30225, Nairobi
- Tel: (254.2) 746005/7
- Fax: (254.2) 746028/30
- Internet: <http://www.kenyamanufacturers.org>
- E-mail: kam@africaonline.co.ke.

○ **Kenya Bureau of Standards**

- P0 Box 54974, Nairobi
- Tel: (254.2) 502210-19
- Fax: (254.2) 503293.
- The bureau regulates goods that require inspection upon import into Kenya.

○ **Kenya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 (KIPI)**

- P0 Box 51648, Nairobi
- Tel: (254.2) 602210/1
- Fax: (254.2) 606312
- Internet: <http://www.kipo.ke.wipo.net>
- E-mail: kipi@swiftkenya.com.
- The KIPI is responsible for licensing of all intellectual property in Kenya except copyrights.

○ **Kenya Revenue Authority (KRA)**

- P0 Box 48240, City Square, Nairobi
- Tel: (254.2) 310900
- Fax: (254.2) 240927
- Internet: <http://www.revenue.go.ke>.
- The KRA assesses and collects taxes, and it oversees tax legislation.

○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Monopolies and Prices Commission**

- P0 Box 30007, Nairobi
- Tel: (254.2) 338111 ext. 33257
- Fax: (254.2) 330426
- Internet: <http://www.treasury.go.ke>
- E-mail: competition@wananchi.com.
- The ministry issues Certificates of Approved Enterprise and clears mergers and acquisitions.

○ **Registrar of Companies**

- P0 Box 30031, Nairobi
- Tel: (254.2) 227461
- Fax: (254.2) 211082.
- The registrar approves company names and registers branches of foreign firms.

22. 시장특성

가. 소비자 특성

1) 시장규모

케냐의 GDP는 2005년 기준 약 194억불(추정치, 2004년 161억불)이며 연간 수출입 규모는 수출 59억불(2004년 27억불), 수입 32억불(2004년 45억불)로 총 91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GDP)은 2000년 들어 400불을 넘었고 2005년 565불을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도 절대 빈곤층 인구가 많아 구매력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외에도 케냐는 아프리카지역 UN본부 및 외교관은 물론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와 종교 지원 단체들이 진출하여 원조 및 선교사업을 하고 있어 별도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케냐는 지리적으로 동부아프리카의 중심지이며 몸바사 항구,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시설이 인근 국인 탄자니아, 우간다(내륙국) 등과 비교 시 발달되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지역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시장이다.

2) 시장특성

케냐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발전도도 우리나라의 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열악한 실정이다

케냐의 수입 구조를 보면 수입의 경우 원유 및 산업용 원자재가 78%를 점유하고 있어 일반 소비재 시장이 크지 않은 편이며, 자동차 및 의류 등도 중고제품의 수입이 범람하여 신차 딜러 및 케냐 섬유 제조 업체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수출은 농업 가공품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케냐 산업 및 소비자용품은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등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다.

유통 및 시장 지배력은 영국지배 당시 철도건설로 케냐에 이주한 인도계 상인들이 자본력 및 상업력을 갖고 시장의 8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인도계 무역상인은 주로 영국 등 유럽 및 중계 무역지인 두바이(다품종형 저가공급지로 시장점합성이 높음), 인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향이 높다. 유통구조는 매우 단순하여 수입상이 수입 및 도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소매점을 보유하여 소매 까지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들 아시아계 인도인들은 힌두 및 이슬람 등 종교적 연대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3세대째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 케냐 종족들이 경제집중 등을 이유로 점점 배타적인 시각이 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테러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인도계 기업인들은 케냐 외에 타 지역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려 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냐는 2000년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 Community)의 주도적 인 역할을 이끌고 있으며, 2006년 초부터는 EAC국간의 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려는 동아프리카 3국 무관세 동맹이 발효되어, 특히 제조업의 경우, 앞으로 케냐에 현지 투자를 통한 무관세 동아프리카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1 : 케냐 정부발행 'Economic Survey 2006' 참고

자료원2 : ‘ Monthly Economic Review 2006년 5월호’ 참고. (2006년 6월 현재 최근 자료)

나. 유통채널

케냐의 유통구조는 시장협소로 다품종 소량위주의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제조업체/수입업체-중간도매상-소매상으로 유통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도매상이 직접 수입 및 소매하기도 한다. 일부 다품종 상품 수요는 상당수가 두바이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한편 90년 말 들어 케냐의 소매점 형태도 대형화가 되고 있는 추세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매시장을 주도하는 우추미 수퍼나 나쿠마트 수퍼가 있다.

이들은 Vender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관행이나 약 10-20%선까지는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주요 유통업체

- Uchumi Supermarket
 - P.O.BOX 73167, Nairobi, Kenya
 - (전화) (254-20) 227001
- Ebrahims Supermarket
 - P.O.BOX 44832, Nairobi, Kenya
 - (전화) (254-20) 333010
- Nakumatt Holdings Ltd.,
 - P.O.BOX 78355, Nairobi, Kenya
 - (전화) (254-20)243907,740901
 - (팩스) (254-20)543479
 - (e-mail) headoffice@nakumatt.com
- Ebrahim & ComPany Ltd.
 - P.O.BOX 40879, Nairobi, Kenya
 - (전화) (254-20) 229987
 - (팩스) (254-20) 333423,330929
- K & A Self Selection Stores
 - P.O.BOX 41631, Nairobi, Kenya
 - (전화) (254-20) 223831

다. 한국상품 인지도

최근 무역관에서 실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108명 응답자 중 51명정도가 한국제품을 한번이라도 구매해 본적이 있으며, 차후에도 구매하고 싶다고 반응하였으며, 한국브랜드 업체로는 삼성 62명, LG가 50명, 대우 45명, 현대 35명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케냐 현지에서는 삼성의 휴대폰이 노키아와 정상 다툼을 하고 있으며, LG는 가전제품 분야, 특히 TV와 냉장고 부분에서 현지인들의 인지도를 독차지 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대기업의 인지도를 배경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이며, 특히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료기 등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라. 유망상품

품목명(MTI코드)	추천 사유	경쟁국
플라스틱 금형 (7532)	- 제조업 투자활성화와 소비회복으로 각종 플라스틱 금형 수요 증가	대만, 홍콩, 인도
인쇄용지 (2522)	- 케냐뿐 아니라 우간다, 탄자니아 등 동 아프리카 3국이 산림 자원보호 - 현지 생산 인쇄용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중이며 인과이어리 다발	인도네시아, 말련
식품포장기계 (7242)	- 포장산업이 열악한 가운데 각종 식품포장 기계에 대한 수요 다발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뿐 아니라 NGO 등 원조물품 포장기계도 유망	대만, 홍콩, 인도
자동차부품 (7420)	- 일제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으로 중국에서 개발이 곤란한 제품 - 트럭용 크랭크 축, 디스크 등	일본, 중국
건설중장비 (7251)	- 케냐 정부의 주택 50 만호 건축사업과 나이로비 순환고속 도로 건설 등으로 건설중장비 수요 증가 - 불도저, 포크레인 등 건설중장비와 부품	일본, 유럽
보안장비 (8124)	- 9.11테러이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일환으로 주요 공원 및 나이로비 주요 건물에 보안감시장치 설치 증가 - 정부차원에서는 감시시스템, 민간 - 국제기구등은 도어록, 지문감시 시스템 등이 유망	대만, 일본, 유럽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발굴

가. 제조자 협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케냐 내 제조업자 협회(KAM,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바이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우선 KAM을 통해서 관련 제조업체들을 파악한 후 직접 메일과 팩스 등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AM웹페이지 www.kam.co.ke 를 참조

나.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

케냐 내에는 3-4개의 전시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며 각각 10여회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전시품목은 종합품목, 의료기기, 건축, 농업관련 기계 및 부속품, 여행상품, 보안, 인쇄물 등이다.

케냐는 물론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전시회는 매년 10월초에 개최되는 나이로비 국제무역 전시회로, 주요 바이어들이 인근 동아프리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지에서 대거 참가하므로 전시회를 통한 바이어 발굴에는 적격이다.

다. 각종 주소록을 이용한 바이어 발굴

케냐 내 옐로우페이지 책자를 이용하여 해당 바이어를 접촉하는 방법이다.

라. 참고사항

케냐 내에는 아직도 인터넷을 이용한 e-commerce 개념이 약하여 가급적 용량이 큰 e-카탈로그를 통한 홍보는 지양해야 하며 (전자메일로 첨부할 경우 용량이 너무 크면 자주 접속이 끊어져 바이어에게 오히려 안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음), 가급적 안전한 DHL 또는 EMS를 이용하여 인쇄된 카탈로그 및 샘플을 공급하는 편이 유리하다

아직도 유력한 바이어들 중에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는 바이어들이 너무 희귀하여 가급적 현지 무역관이나 현지 주소록, 옐로우페이지 등을 통해서 바이어 리스트를 구축한 후 직접 접촉하여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식으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좋다

유력바이어와 거래 가능성이 열린 경우는 전화나 팩스 보다는 가급적 한번 정도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첫 거래를 성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케냐 비즈니스 디렉토리: <http://www.nationmedia.com/directory/home/index.asp>
- 케냐 투자진흥청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http://www.investmentkenya.com>
 - 경제통계, 투자관련 정보, 관세법등 유용한 정보수록
- 케냐 차(Tea)개발연구소 (Kenya Tea Development Agency) : <http://www.ktdateas.com/>
- 케냐 옐로우페이지 (Yellow Pages) : <http://www.yellowpageskenya.com>
 - 케냐내 각종 상호별, 이름별로 Search가 가능한 홈페이지
- 케냐 일간지 Nation Newspapers 홈페이지 : <http://www.nationaudio.com>

- 케냐 일간지 East African Standard 홈페이지 : <http://www.eastandard.net>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거래조건 및 상거래 참고사항

케냐의 결제관행은 일반적으로 USANCE L/C 60-90일 정도이다. 하지만, 일반은행들의 재정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가능한 L/C개설 시 우량은행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Barclays Bank, Citi Bank, Standard Chartered Bank, Commercial Bank of Kenya 등의 신용장외의 자국 내 군소은행발행 L/C는 제3국 은행의 CONFIRM을 받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역관이나 현지 공관을 통해 거래은행의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L/C at sight를 요구할 수 있으나 화학 원료 등의 경우 대부분이 DA, DP거래가 일반적인데, 이는 현지 은행금리가 20%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NDER VALUE등도 성행하고 있고 신변장신구, 가전제품 등의 경우 두바이 등을 경유 밀수품이 반입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와의 비즈니스는 통신장애 및 비즈니스 관행상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야 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화를 내는 것은 금물이다. 현지 상권의 대부분(75-80%)을 인도상인이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 무역업무에 상당한 수완을 가지고 있어 신중한 상담자세가 요구된다.

일례로 현지 수입상들의 대부분이 두바이, 유럽, 인도 및 아시아 국가(중국, 대만, 일본) 등과의 거래에 친숙하며, 두바이로부터는 수시 연락 및 결제하는 요령에 능란하다. 자동차 부품이나 석유류의 경우 상담 중에도 직접 두바이 공급업체에 가격을 요청하여 상담 시 가격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지식 세 가지

첫째, 제조업체, 바이어 및 딜러구분이 불명확

열악한 제조시설 기반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도 수입과 유통을 겸하고 있어 제조업체, 바이어 및 딜러구분이 불명확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가격지향적인 시장이면서 최종 소비가는 고가임.

소득수준이 낮아(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요 동아프리카 3국 평균 1인당 GDP 300불 이하) 가격을 심하게 따지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최종 소비단가는 높은 관세,

부가세(18%) 및 과다한 마케팅 비용으로 높은 편이다.

셋째, 인도상인이 시장지배

역사적으로 영국 식민지 지배시대에 인력으로 유입된 인도인들이 상술과 근면성을 토대로 동아프리카 상권을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인도인 기업 오너들은 구라파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지에 가족이나 대리인을 두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나. 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들

첫째, 가격비교에 당하지 말 것

현지 바이어, 특히 인도인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여 제품 구매행위시 공급자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들어, 국내업체로부터 견적을 징구후 또다른 한국업체로부터 견적을 끝도 없이 비교하여 구매의사를 결정하며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밀도는 견적을 요구할시는 과감히 거절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입찰 참가시 에이전트와 확실한 계약관계 유지

대형 조달시장 참가시 수주활동에 에이전트의 역할이 필수적이거나, 외국 공급업체들과 현지 에이전트간에 법정시비가 많아 에이전트 계약시 양측 권리 및 의무관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급할수록 두들겨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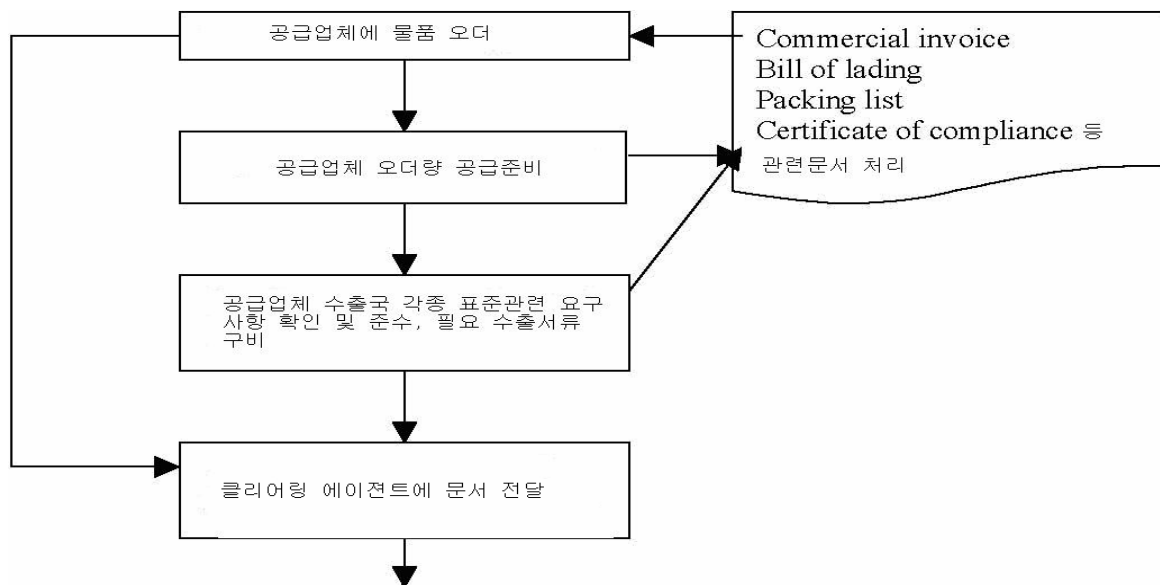
급한 오더일수록 함정이 많아 첫거래인 경우 위험성이 높은 외상거래 (D/A)는 가급적 지양하고, 사정이 급한 바이어측에서 우리요구를 수용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일례로, 국내 D사는 케냐 바이어에게 지난해 9월 자동차 필터 3만불 상당을 D/A로 수출하고 아직까지 대금회수를 못하고 있고 K사의 경우 금년 4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에 납품 할 난민구호용 텐트를 급히 찾는 바이어 신용만 믿고 D/A로 물품을 선적하였다가 대금회수도 지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바이어와 거래시 가능한 L/C거래를 유지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외상거래를 해야하는 경우, 장기간 거래로 신용이 확인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되, 이경우도 최종 선적분의 대금은 포기 하는 심정으로 평소 D/A 거래분에 대해 충분한 마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27. 통관절차

가. 주요 통관절차 개요

통관절차 개요



수입품 오더이전 절차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무역 자격증 (Trade Licence) 확보	케냐 무역산업부	Licence
단계 2	필요시 수입허가증 확보	케냐관세청	Licence
단계 3	음식물, 의약품, 화학관련제품은 수입허가증 확보	항만검역소 케냐식약청	Permit
단계 4	농산물의 경우, 식물수입허가증 확보 및 식물 생태정보(phytosanitary)를 수출업자를 통해 증빙	KEPHIS	Permit Phytosanitary requirements
단계 5	케냐 표준청으로부터 수입품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수출업자에게 전달	케냐표준청	Standard specification
단계 6	수입품에 대한 제품명, 품질, 스펙, 수량 등을 문서화	수입업체	Specifications
단계 7	수입품에 대한 금수조치, 관세혜택, 덤핑 관세부여 여부 확인	관세청	2nd schedule of the EA Customs Management Act
단계 8	수입품에 대한 금액 확인	수입업체	Costing schedule
단계 9	수입품에 대한 재정 조달	수입업체/은행	Funds are available
단계 10	기타 거래관련 상담	거래 은행	Financial advice

수입품 오더시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	-------	------	------

단계 1	공급업체 선정 및 가격 협상	공급자	Contract Place order
단계 2	수입시 거래할 은행에 대하여 통보	수입자	Bank name
단계 3	계약에 따라 수입대금 처리	수입자	Advice on payments

수입품 도착전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선적서류 구비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Airway bill, Certificate of conformity 등)	수입자	-
단계 2	통관 에이전트 선정	KIFWA	
단계 3	통관 에이전트 통관관련 비용 수입자에 통보	통관에이전트	
단계 4	통관 에이전트 운송업체 지정	Transporter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관련서류 세관에 처리	Clearing Agent KRA	
단계 6	품질검사 관련 서류 통관 에이전트에 전달. 에이전트 표준청으로부터 승인 획득	KEBS	
단계 7	통관 에이전트는 필요시 KEPHIS나 항만 보건소에서 승인 획득	KEPHIS/ Port Health Office	

수입품 도착시

순서	주요 사항	처리부서	관련서류
단계 1	세관에서 수입품 확인	KRA	
단계 2	통관허가서 (Release order) 발행	KRA	
단계 3	품질 표준검사 및 확인증 발행	KEBS	
단계 4	항만세 지불후 수입품 통관 에이전트에 인수	KPA	
단계 5	통관 에이전트 수입품 운송	Transporter	
단계 6	수입자 인수		

28. 운송

가. 무역항 및 공항 개황

1) 국제공항

케냐의 국제공항은 나이로비에 케냐타(Kenyatta) 인터내셔널 공항, 몸바사에 모이(Moi) 인터내셔널 공항 및 엘도렛에 있는 엘도렛(Eldoret) 국제공항 등 3개가 있다

2) 국제항구

국제 항구로는 동해안에 위치한 Mombasa 항구가 있다. Mombasa 항구는 1896년 Kilindini에 건설된 최초 의 선창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영국에 의해 추진된 케냐-우간다 간 철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운반을 위한 목적이었다. 현대식 항구로 몸바사가 개발된 것은 1926년부터이며 1931년까지 대형선박 정박시설 이 완료 되었다.

나. 운송비용

내륙운송비용

육로교통	20 ft container	40 ft container
몸바사-나이로비	\$ 500	\$ 750
나이로비-몸바사	\$ 320	\$ 510

자료원 : EPZA website

RAIL	20 ft container (loaded)	40 ft container (loaded)	20 ft container (empty)	40 ft container (empty)
몸바사-나이로비	USD 468	USD 900	USD 408	USD 840
나이로비-몸바사	USD 252	USD 480	SD 60 U	USD 120

자료원 : Kenya Railways Authority

다. 주요 운송회사 및 통관서비스 회사 리스트

1) Millenium Forwarders Ltd

- Add: Canon Towers 1, 1st Floor Moi Avenue, P. O. Box 99746-Mombasa Kenya
- Tel : (254-20) 2220781
- Fax: (254-20) 2221935
- 전자메일: mfs@kenyaweb.com
- 업 종(Business Line): Shipment, Clearing and Forwarding
- 담 당(Contact Persons): Mr. Osborne Arunga (Managing Director)
- 설립년도(Year Established): 1995
- REMARKS: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통관업체 임.

2) SDV Transami (K) Ltd

- Add: North Airport Road, Embakasi, Nairobi Kenya., P. O. Box 46586-00100, Nairobi, Kenya
- Tel (254-20) 6421000, 8231111, 823118 ☎ Fax: (254-20) 823195

- 전자메일: osman@transnami.co.ke
- 홈페이지: www.transami.co.ke
- 업 종(Business Line): Clearing and Forwarding, Transportation, Warehousing, Packaging and Removal
- 담 당(Contact Persons): Auni Bhaiji (Operations Director) / Mr. Osman
- REMARKS: 주로 대규모 화물 통관을 담당하며 상당히 신뢰도가 높음.

3) AGS Worldwide Movers (K)

- Add: Mombasa Road, Nairobi Kenya., P. O. Box 14061-00800, Nairobi, Kenya
- Tel : (254-20) 823490,
- Fax: (254-20) 823491
- 전자메일: www.ags-demenagement.com
- 홈페이지: agskenya@kenyaonline.com
- 업 종(Business Line): Shipment, Clearing and Forwarding
- 담 당(Contact Persons): Mr Gil Recizac (Managing Director)
- REMARKS: 프랑스의 국제적 통관업체로 프랑스에 17개, 프랑스 관할지에 7개, 유럽에 17개, 아프리카에 2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도어-투-도어 서비스와 보관창고 서비스까지 가능하여, 신뢰도와 신용면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아프리카 운송 환경에서는 가장 권장 할 만 함.

29. 분쟁해결 절차

케냐 중재법에 의하면 무역분쟁을 포함한 각종 중재는 케냐 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권위를 갖으나 만약 쌍방간에 불응할 경우는 해당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정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적 해석만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해석에 기준하여 최종 결정을 '중재위원회'에서 재 결정하도록 다시 추심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고 있어 처음부터 케냐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위원회'를 통해 분쟁해결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위원회'는 미국, 일본, 한국, 인도 등이 가입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국제규약을 준수하면서 케냐와 동아프리카 내 중재법을 적용하여 각종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동 중재위원회는 2004년에 케냐 대법원장이 법률자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나 2005년 동아프리카 공동체 출범에 따른 동아프리카공동체 법원의 발족으로 동아프리카 공동체 법원장이 현행 자문으로 맡게 되었으며 그 외에 약 16명의 법조계 전문가들을 자문관으로 두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실무책임은 현재 상공회의소 제1부소장인 Laban Onditi Rao가 맡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위치: Ufanisi House, 2nd Floor, Haile Selassie Avenue, P. O. Box 47024-00100, Nairobi Kenya
- 전화: 254-20-220867
- 팩스: 254-20-318367
- 전자메일: kncci@swiftkenya.com (상공회의소), labrao@yahoo.com (MR. Laban Onditi Rao)

Rao 개인)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케냐-이집트간 차(Tea) 보복관세 분쟁

원래 이집트의 COMESA 회원가입 당시 케냐 제조업체 연합(KAM; The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은 이집트가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Maghreb)에 속해 있고, 산업발전 단계가 동남 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회원국들이 자유경쟁하기는 버거운 상대로 이집트의 COMESA 회원가입을 반대한 바 있어 양국 무역전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확인이라도 해 주듯이 이집트는 2003년 8월 케냐정부의 FTA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케냐산 차(Tea) 수입제품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양국협상으로 이집트가 보복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타결된 바 있다. 이집트는 케냐 주요 외화벌이 산업인 차(Tea)의 제 3위 수입국이다.

나. 케냐-이집트간 철강 무역분쟁 사례

2003년 8월 차(TEA)보복관세 분쟁에 이어 이집트는 케냐 제1의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Mabati Rolling Mills사가 이집트 Kandil Steel사에 공급 하기로 한 500톤의 철강제품에 대해 공급사(Company Name) 및 원산지명(Country of Origin)을 명기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케냐 측에서 제품에 원산지 등 표기가 기술적 으로 불가능한데다 이집트가 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COMESA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수입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총력대응 한 바 있다.

케냐 제조업체연합(KAM; The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은 모든 이집트산 수입 제품에 대해 30%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케냐정부에 건의하였으며, COMESA 사무국 에서 협상에 나서서 해결해 준비 있다.

참고로 COMESA내 자유무역지대(FTA) 회원국이 유럽 등 제3국 수입제품에 부가가치를 35%만 높여서 역내 국에 재수출하여도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이집트로부터 많은 제3국 제품들이 케냐 로 유입되고 있어 한국산 가전제품 등도 피해도 큰 편이다.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2004년 투자유치는 총 131개사 2억 7,300만불 투자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금액이 1억 6,700만불, 내국인 투자유치금액이 1억 700만 불로 거의 50%, 50%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은 외국인 439명, 현지인 13,467명을 기록하였다. 2005년 투자유치는, 총 104개사 1억 3,562만 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투자유치금액은 8,193만불 수준이며 내국인 투자유치금액이 5,369만 불을 기록 내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모두가 위축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용창출도 외국인 327명, 현지인 8,070명을 기록하고 있다.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현재 우리 기업의 대케냐 투자의 경우는 (주) 파라다이스가 종합 관광호텔로 투자한 사파리파크 호텔외에는 삼성, LG, 대우등이 지역사무소 형태로 진출하여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진출활동을 벌이고 있을 뿐 그외에 기업차원의 이렇다 할 투자가 없는 형편이다.

민간 및 개인투자의 경우는 2004년까지 저조하다가 2005년에 접어들면서 한국은행 신고기준으로 3건 300만불 수준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2006년 상반기에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케냐 투자교류 통계

(단위 : 건, US\$ 천, 연간누계)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년		200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 케냐진출 (신고기준)	1	800	1	500	0	0	1	800	3	3,090	0	0
(투자기준)	0	0	2	292	0	0	0	0	3	192	0	120
우리나라유치	-	-	-	-	-	-	-	-	-	-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33. 투자 환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보호

1) 기본방향

- 외국인 투자 적극유치: 외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 목적
- 투자 원금 및 배당금 송금 완전 자유화 및 외환구좌 보유 허용
- 케냐 경제에 이익이 되는 어떤 형태의 투자도 환영
- 지방도시 투자 시 더 많은 특혜 부여
- 외국인에 대한 투자보호(헌법 제 75조에 명시)
 - 63년 독립 후 케냐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몰수 또는 공공 수용사례 없음.

2) 외국인투자보호법(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Act, 1964)

- ① 인가기업증명서(Certificate of Approved Enterprise) 발급요건
- ② 투자자본 및 이윤, 차입원리금 본국 송금보장
- ③ 외환관리법 규정준수 의무
- ④ 외국인 투자 강제수용 등은 헌법과 동법에 규정된 경우 이외는 금지

3) 기타 법규: 회사법, 세법, 고용관리법, 수출보상법, 회사 등록법 등

- 외국인 투자산업의 보호(케냐 헌법 제 75조)
- 과실 및 투자원금 송금(외국인 투자보호법)

- 외국인 투자가는 재무부로부터 투자기업 인가서 획득 시 각종 혜택 수혜
 - 과실송금은 세금 공제 후 전액 허용되며 투자원금도 송금 가능함.
 - 투자원금은 투자하는 외국 화폐로 표시 가능 (88.6월 개정)

4) 국제법 준수

-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케냐는 World Bank 산하기관인 MIGA의 회원국이며, MIGA는 회원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비상업적 리스크(전쟁, 내란, 회원국의 정책변경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예방, 안전조치 제공 등을 보장함.
-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케냐는 ICSID 회원국,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회원국간의 분쟁 중재

나. 투자매력도

케냐는 '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 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하여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 국가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기반과 인프라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가져,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를 진출 거점으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이디오 피아 및 남부 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숙되고, 역내산과 역 외산 수입관세 차이가 회원국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60-8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현지 진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COMESA (www.comesa.int)는 현재 총 20개국회원국에 3억 8천만 인구, 총 GDP 1,874억불 (2002년 추정치) 규모로, 2002년 기준, 미화 309억불 수입과 463억불 수출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시장이며 '99.5월 케냐 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결의한 대로, 지난 2000년 10월말 역내에 무역 자유화 지대를 창설하여 단일 경제 공동시장(수입관세 및 장벽 철폐)을 결성하고 COMESA 역내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 기준도 종전 45%에서 35%로 인하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다.(일부 COMESA 회원국은 40% 기준 유지)

이외에도 동아프리카 3개국으로 이루어진 동아프리카 공동체(EAC)가 2000년 말부터 정식 출범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관세동맹을 맺어 역내 무관세 교역을 추진 중이어서 케냐를 통한 인근 국 진출 투자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ACP)국가에 대한 개발협정인 LOME 협정의 후신인 Cotonou협정이 2000년 6월 에 발효됨으로 향후 2020년까지 유럽 국가로의 재수출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2008 년까지 유효한 아프 리카 성장 기회법을 활용한 대미 진출이 (특히, 섬유산업)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 외국인투자 개방화 정도

케냐는 1964년 외국인투자 보호법(81,88년 소폭 개정)을 제정하고, 헌법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권 침해 금지조항을 두는 등, 외국인투자보호 및 유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해 오고 있다. 케냐 정부가 장려하는 외국인

투자분야는 국내자원을 활용하는 수출산업(노동집약산업, 관광), 외화절약을 도모하는 수입 대체 산업(식품가공업, 농산물, 화공제품 제조업)이며, 규제분야 업종은 전력, 통신, 철도, 항만, 공항, 국가방위산업 등 공공산업과 식품의 유통업 정도에 국한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허가는 '86년까지 상공부와 재무부에서 관장하여 투자절차가 번거로웠으나, 1987년 IPC (Investment Promotion Center)가 설립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각종 상담 및 투자허가 등 일체 지원을 해주고(one stop service) 있다. 특히, 2002년부터 IPC는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촉진 하기 위해 종전의 12만불 이상이던 투자인정 최소금액을 약 7만불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4년 말부터 종전 의 23여가지 서류 처리가 필요하던 투자승인절차를 단 1개의 서류로 일괄 처리 하도록 간소화 시켜 해외 투자유치에 참여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라.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업종별로는 전력, 통신 등 공익산업과 농지용도 외 투자가 규제되며 기존 협동조합과의 유통망 진출, 케냐기업 인수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마.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

외국기업이 직접 소매상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허가 받은 도매상을 통해 내수판매가 가능하고 외국인 고용은 이민국의 취업규제 강화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바. 투자허가

1) 회사등록(회사법 제 486조)

- 등록예정 회사명 사전조회, 등록여부 사전 확인 가능
- 신청기관: 법무부 산하 Registrar of Companies (P.O. Box 40112, Nairobi, Kenya, 전화 254-2-227461)
- 소요비용: 자본금 규모에 따라 약 500불 전후 (정관작성 등 변호사 비용포함)

2) 투자승인 취득(회사법 제 486조)

- 회사등록확인서(필요시 합작투자, 로열티, 관리계약서 첨부)와 신고서 제출
- 신청기관: Invest Promotion Centre (P.O. Box 55704, Nairobi, Kenya)
- 전화 254-2-221401, 팩스 254-2-336663
- 소요기간은 약 3 - 4주,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없음.
 - IPC는 투자유치 및 승인을 위한 정부산하 One Stop Service 기관으로서 Work Permit 취득 등도 간접 지원함.

3) 영업허가 취득(필요시)

- 투자 제한분야 진출 시에는 관련부처 승인 필요

4) 소득세 고유번호 등록

- 국세청에서 소득세 고유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취득 필요
- 소요기간은 약1주이며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없음.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PIN, PIN Office, Income Tax Department, Kenya Revenue Authority (P.O. Box 30165, Nairobi, Kenya, 전화 254-2-712430)

5) 부가가치세(VAT) 고유번호 등록

-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고유번호 취득 필요(연락사무소 불요)
- 소요기간은 약 1 - 2주이며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없음.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VAT Office, VAT Department, Kenya Revenue Authority (P.O. Box 49070, Nairobi, Kenya, 전화 254-2-711743)

6) 지방정부 인가(Licence) 취득

- 영업소재지 관청에 영업을 위한 인가 신청
- 신청기관(나이로비의 경우) The Town Clerk, (Attn: Licensing Section), The Nairobi City Council (P.O. Box 30075, Nairobi, Kenya, 전화 254-2-224281, 팩스 254-2-218291)
- 소요기간: 약 2주
- 비 용: 12불 + Annual Fee(제조업 340불, 무역업 100불 등)

7) Work Permit (장기 취업사증)

□ 개 요

- 케냐 정부는 입국시 유효기간 3개월의 사증 발급
 - 동 사증은 1회에 한해 3개월간 연장 가능
-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장기체류 사증 취득 필요

□ 장기 체류사증

- 장기체류 사증은 일반적으로 Work Permit으로 통칭
- 동 사증은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서 발급
 - 고용자는 "Class A"에 해당하는 비자 취득 필요
 - 사업자는 "Class H"에 해당하는 비자 취득 필요
-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 근거하여 취업비자를 획득한 고용자의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동 사실을 7일 내에 이민국에 통보
 - 케냐는 영주권 제도 없음

□ 동반가족 사증

- Work Permit을 취득한 자는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동반가족의 사증 신청
 - 기 타: Work Permit 관련 상세사항은 이민국내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

34. 투자 인센티브

가. 일반적 인센티브

수출자유지대(EPZ)를 제외하고 건별로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으나 94년 IPC의 일괄 인센티브 제도가 현재 시행중이다. 세액공제는 기계, 건축, 광업, 농업분야 품목별 연간베이스 기준으로 공제가 행해지고 있다.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면제 혜택은 수출촉진 및 전략부문 자본재 수입시 수입 금액 일부를 외국인 투자가가 지원할 경우 재무부와 협의하여 관세 1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95년 투자우대조치 계획에 따라 2백만 달러 이하 사업에서 개인 투자용으로 2년 이내 사용되는 자본재에 부과된 수입관세는 재무부장관 승인하에 투자자의 소득세 감면 등으로 상쇄 가능하다.

나. 투자공제 비율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60% 투자공제 인정하며, 설비투자용 기계, 플랜트 등 1천만실링(약 120만불)에서 5천만실링(약 600만불) 수입시 10%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투자한 건물, 기계, 사무용기기 등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에 대한 매년 세금은 공제되며, 보세가공지역(MUB)에 투자시 투자공제는 100%이다. 케냐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 중 제조 및 호텔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60%를 공제함.

다. 감가상각비율

호텔은 4%/년, 산업용 건물은 2.5%/년, 기계류는 12.5%/년, 차량류는 25-36.5%/년,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는 30%/년이다.

라. 특정산업 인센티브

기계류는 12.5%에서 37.5%까지로 농기계 37.5%, 컴퓨터 30%, 운송기계 25%, 선박 및 사무용기기 12.5% 등이다. 건축물은 호텔 4%, 공장 및 교량은 2.5%가 적용되나 무역 및 제조업과 관련되지 않은 상점과 사무실은 비공제 된다.

보세허가업체는 100% 세액공제를 받으며 EPZ 입주기업은 공장설비에 대해 20년간 공제되며, 농업 및 목축업은 3년간 연 33%, 광업 및 495톤이상 선박 구입시 공제 가능하다. 식량생산 및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비료, 농기계, 소독제 등의 수입관세는 전액 면제된다.

석유 탐사장비 반입도 재무부 허가시 관세가 면제되며 사업규모 10백만실링 이상인 외국 자본호텔 개보수 및 증축을 위한 장비 반입도 외화 수입증대 효과가 증명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마. 특정지역 인센티브

자본금 100백만실링 이하 소규모 기업이 Nairobi 및 Mombasa이외 지역에서 영업하면 수입 자본재 50% 관세가 감면된다.

바. 수출산업 인센티브

관세면제 제도는 제조업분야에서 수출을 위한 원자재 도입에 적용되며 재무부산하 수출진흥청에서 담당한다. 보세허가 제조업 제도는 해외수출진흥을 위한 것이면 국내외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되고 수입장비 및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고 사업용 건물 및 장비도 100% 세액공제를 받는다.

35. 타당성 조사

시장성 조사 및 케냐 합작선 물색에는 물론 정부로부터의 제조, 판매 인허가취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투자진흥센터(IPC)에서 투자허가를 one-stop 서비스한다고 하나 대부분 사항을 본인이 직접 추진해야 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고 인센티브도 인근국 보다 다소 낮은 편임.

케냐측 합작선은 대부분 경영 및 자본기반이 취약하므로 투자기업은 사전에 직접 현지실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자기자금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함.

외국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가격규제가 1994년에 폐지되었으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가격규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기타 협소한 시장규모, 치안문제로 인한 시설 및 원자재 도난, 숙련 노동력부족, 높은 임금, 천연자원 부족, 비싼 사회간접자본 비용 등의 장애요인도 유념하여야 함.

가. 외국인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케냐의 투자 및 외환 자유화 등의 개방화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으며, 2003년 출범한 키바키 대통령 신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및 공무원 근무태도 개선 등 대외 투자 신뢰도 회복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 외국인의 투자 진출시 이전과는 현저하게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 정권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여 높은 제조비용, 금융시장 불안(고이자율), 노동생산성 열위 등 각종 장애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나. 사회간접자본

동남부 아프리카중 향만(동아프리카의 관문), 도로, 철도(인접국인 우간다, 탄자니아와 연결), 전력, 수도, 통신시설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1) 석유

원유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상업 에너지의 80%를 석유 및 석유 제품에 의존하고 있음 (외화수입의 21%를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에 지출) 지난 30여년간 석유 자원 개발을 꾸준히 시도해 왔으나 아직도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였다.

2) 전력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매년 8% 정도가 되고 있어, 수력 및 지열 발전소 건설을 통한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발전량은 825MW(수력: 600MW, 화력: 180MW, 지열: 45MW)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1500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항공

국제공항으로는 나이로비, 몸바사, 엘도레, 국영항공사는 Kenya Airways(77.2월, East African Airways 해체 후 설립), 취항 항공사로는 Air France, British Airway 등 약 40개, 활주로는 약 150개이다.

4) 철도

과거 몸바사와 우간다 국경을 연결하는 2,085km 구간 영업(93.12. 몸바사-우간다 캄팔라 구간 재개통) 218대의 기관차, 500대의 객차 보유하고 있다.

5) 도로

포장도로 8,300km 포함 총 연장거리 63,000km이다.

6) 운송 수단별 비중

도로(44%), 항공(27%), 해운(13%), 항공(10%), 기타(6%)이다.

36. 투자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가. 회사등록(회사법 제 486조)

- 등록예정 회사명을 사전 조회하여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후, 정관.규정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기관: Registrar of Companies, P.O.Box 40112 Nairobi, Kenya Tel: 254-2)227461
 - 소요기간: 약 1-2주
 - 소요비용: 변호사비 포함 약 \$500.
 - 회사법 제 486조, BN/2양식

나. 투자승인

- 회사등록 확인서, 필요 시 합작투자, 로열티 및 관리계약서와 함께 신고서 제출
 - 신청기관: The Executive Chairman, Investment Promotional Centre
 - 케냐정부산하 투자유치 및 승인 One Stop Service 기관
 - 투자승인 및 관련 영업라이선스 Work permit 등 간접 지원
 - 주소: P.O.Box 55704 Nairobi, Kenya
 - Tel: 254-2)221401
 - Fax: 254-2)336663
 - 소요기간: 약 3-4주

- 특별한 소요경비 없음.
- 정부 영업허가(필요 시)
 - 관련 부처에서 투자제한 분야에 대한 승인이 필요 시
 - 관련 정부부처(예: 통신사업 건설통신부, 의약품 보건부 사전 등록)
- 소득세 고유번호 등록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PIN, PIN Office, Income Tax Department
 - 소요기간: 약 1주
 - 소요비용: 특별한 비용 없음.
- VAT 등록
 -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의 경우 불요
 - 신청기관: Commissioner of VAT NSSF Bldg BLK B(Rm 1007)
 - Tel: 254-2)711743
 - 소요기간: 약 1-2 주
- 지방정부 라이선스
 - 영업소재 시 정부에 지방영업 라이선스 신청
 - The Town Clerk (Attn: Licensing Section)
 - The Nairobi City Council
 - P.O.Box 30075, Nairobi Kenya
 - Tel : 254-2)224281 Fax: 254-2)218291, 214780
 - 소요기간: 약 2주
 - 신청비: \$12 + Annual Fee(제조업 \$340, 무역업 \$100 등)

다. 지사설립 절차

- 지사 개설 후 3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법무부 산하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 하여야 한다.
- A certified copy of the Charter, Statutes of Memorandum 혹은 회사설립(조직)을 규명하는 자료
- 이사 및 회사서기(Secretary) 이름, 국적 및 케냐 내 회사 이사명단
- 케냐 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채명세서
- 회사를 대신하여 공시문서를 접수할 수 있는 케냐 내 거주자의 이름 및 주소
- 소속국가 회사의 주 오피스 주소
- 케냐 내 비즈니스 장소 및 주소
- 기타 등록과정은 현지법인과 동일하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지사의 경우 정부 영업허가 및 VAT 등록은 불요하다.

Registrar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관련 당국에 무역 허가증 등을 발급 받는다. (현재는 모든 무역관련 허가증을 하나로 통괄하여 단수영여허가증(Single Business Permit)으로 통괄되었음). 해외진출 지사의 경우는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아래표 참조)

연락사무소 형태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지사의 경우 정부 영업허가 및 VAT 등록은 불

필요하며, 법인세 및 VAT도 면제된다.

현지법인 및 지사의 세제상 차이

구 분	현지법인	외국계지사(1)	연락사무소(2)
법인세 (Corporation Tax)	과세이익의 30%	과세이익의 37.5% 또는 과세이익 20실링 당 7.5 실링	법인세 및 VAT 면제
기타 소득세	동일		

주: 지점이 해외본사에 지불한 경비는 세금 공제대상이 아님.

- 외국계 지사는 외국계열의 회사로 케냐 내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으로 등록하여 영업 활동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를 지칭
- 연락사무소는 외국계열의 지사로 연락사무소 역할 외에 주재국내에서 수익을 발생 시키지 않는 경우.

라. 기타 참고사항

- Work Permit(장기취업 사증)
 - 현지법인 및 지점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를 위한 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 케냐는 영주권제도가 없음.

마. 투자방식

케냐투자법상 외국인의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다.

케냐내 투자 방식으로는 등록회사(Registered Company), 지사(Branch Office), 합자회사(Partnership), 단독투자(solo-proprietorship), 협동조합(cooperatives)의 다섯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1) 등록회사

등록회사는 개인 또는 공개 유한책임 회사로 등록이 가능하며 제 1차적으로 회사등록사무소에 회사명을 제출하고 등록가능한지 확인한 후 회사명, 주식자본, 투자자별 주식 배당수, 각 투자자들의 유한책임, 운영약관 등을 명시한 회사정관, 등록비, 회사주소(임시주소도 가능) 및 연락처등을 명시하여 등록사무소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케냐는 아직도 회사등록사무소가 전산화가 되지 않아 모든 것이 수동으로 이뤄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속성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가능한 현지 변호사를 회사 임시 서기로 임명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개인회사이든 공개유한책임 회사이든 주주를 두고 배당금을 지정할 수 가 있는데, 개인회사의 경우는 최소 2명에서 50명까지 주주를 둘 수 있고, 공개회사의 경우는 최소한 7명의 주주를 갖춰야 하며 매년 주주와 이사를 회사등록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케냐내 자회사(Subsidiary)를 구성할 경우는 비용이 더 들고 절차가 복잡하기는 하나 현지등록회사와 동일한 케냐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30%의 세율을 적용받는 잇점이 있으며, 이때문에 주로 개인 유한 책임회사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지사형식의 투자

설립절차는 투자' 내 '2. 법인설립'의 5항 진출형태의 지사설립절차를 참조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수출입 활동을 위하여 무역부 또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Single Business Permit'으로 알려진 영업허가서를 취득해야 한다.

3) 합작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합작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며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으나 합작투자 당사자는 케냐의 투자자 선정 및 계약조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투자회사 중 보험, 통신 또는 나이로비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인 경우는 각각 66.7%, 70%, 75%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도록 제한되며, 어업에 관련된 회사의 경우는 어업권 (Fisheries Act)에 의해 의결권주식(Voting shares)의 49%이내로 제한된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 약물 제조업 투자는 마약및 향정신성약물 금지법에 의해 금지된다.

4)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한적거래-독점-가격조정법 (The Restrictive Trade Practices, Monopolies and Price Control Act)의 규제에 따라 재무기획부 (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의 승인을 취득해야하며 재무기획부에서는 회사소유자경력, 운영기록, 재무재표등의 상세내용을 세밀하게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재무기획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따른다.

기업인수 또는 합병은 주로 수출촉진, 고용증대,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 자본기술집약적인 것보다는 노동집약적인 분야 등의 경우 대부분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만약 기각된 경우 제한적거래재판소 (Restrictive Trade Practices Tribunal)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원)

1. An Investment Guide to Kenya 2005년판
2. EIU발행 Country Commerce-Kenya 2005년판
3. Kenya Investment Promotion Act 2004

37. 입지선정

가. 개관

케냐의 산업단지는 주요도시인 나이로비, 몸바사, 엘도레, 나쿠루, 키수무 등에 지정 공업지역이 형성 되어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41개의 수출자유지역 (Export Processing Zones)이 있는데,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Athi River EPZ가 가장 크며, 그 외에도 나이로비, 보이, 케리초, 몸바사, 킬리비 등지에 EPZ가 존재한다.

수출자유지대(Export-Processing Zones: EPZs)는 수출촉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한 공단지역이다. 저렴한 노동력과 운수시설 편의가 제공되며, EPZ Authority의 승인과 사후 감독이 있으며 입주기업에는 사업개시 후 10년간 세금전액 면제, 이후 10년간 25% 세금 부과,

사업개시 후 10년간 배당소득 및 과실 송금에 대한 원천세 면제, 수출을 위한 기계장비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록세, 부가세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1) 수출자유지역관리공단 (EPZA,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개요

- 설립 : 1990년
- 주 소 : P. O. Box 50563, Nairobi, Kenya. 2nd Fl., British American Centre, Mara/Ragati Road
- Tel : (254-20) 712800/6 - Fax : (254-20) 713704
- E-mail : epzahq@africaonline.co.ke
- Website : www.epzakenya.com
- 관리소장 : Mr. R.J. Kigunda (Acting General Director)
- 공단산하 수출자유지역 : 총 17개
- 입주업체 : 총 30개사,
 - Nairobi : 6개 공단 (3개 운영 중, 1개 준공, 2개 건설 중)
 - Athi River : 1개 공단 (운영 중), 최초건설 및 제 1규모
 - Mombasa : 8개 공단 (3개 운영 중, 4개 준공, 1개 건설 중)
 - Malindi : 1개 공단 (건설 중)
 - Kilifi : 1개 공단 (운영 중)

2) 나이로비 수출자유공단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 주소: Box 50563, Nairobi, Kenya. 2nd Floor, British American Centre, Mara/Ragati Roads- Upper Hill,
- 전화: (254-20) 712800/6
- 팩스: (245-20) 713704
- e-MAIL: epzahq@africaonline.co.ke

3) Athi River EPZ Office

전체면적 339 헥타 공장지대이며, 세계은행으로부터 80%, 케냐 정부로부터 20% 자금이 조달되어 수출 지향 산업체에 대해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큰 지역사회인 마보코와 키텡겔라에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업단지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6.7km의 아스팔트 도로, 411개의 가로등, 직경 100-600 mm의 6.2 km 수도관, 부설식당이 있는 4층 행정 건물, 각 1000평방 미터의 6개 공의 건물, 소방서, 병원, 지역 관세, 안전 경찰서, 발전소와 전기 분배망, 4개의 직원 식당 등 간접시설이 있으며, 주로 의류 제조, 전기 조립, 수공업 제조, 식품처리, 포장, 플라스틱 주조, 보석 처리, 종이 변환, 가구 제조 등등의 경공업 투자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민간 투자자들에게 열려있는 투자기회는 다음 6가지 주요 분야이다.

- 아티 리버 EPZ 병원 운영(민간 의사에게 임차)
- 저 소득층의 EPZ 노동자를 위한 주택 건설 (28헥타)
- 식당시설 운영
- 은행이용 가능, Business Center에 공간 확보 가능
- 주유소, 가게, 시장, 호텔, 위락시설을 위한 9.7헥타의 일반 상업 지역

- 전화: (045) 22136/22918 Pm 5시 이후: (045) 22426 (Police Post)

4) 뽀바사 수출자유공단 (Mombasa EPZA Office)

1990년 케냐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 Development Bank)을 초청하여 EPZ를 뽀바사에 건설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케페부(40헥타) 와 코코토니 (400헥타)의 2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키페부 EPZ는 1996.9.19일에 EPZ로 선정되어 면적은 48.84 헥타에 달하며 공항 및 항만에 가까워 완전 한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원래의 디자인에는 18헥타에 72,000평방 미터의 산업 공간을 제공하는 공장으로 표시, 현재 12개의 산업 건물이 첫번째 투자자 그룹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어졌다.

코코토니는 뽀바사로부터 25km 떨어져있으나 철도와 근접해 있고, 넓어서 중공업에 알맞으며, 현재 조사 와 구획구분이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뽀바사의 EPZ 계획은 1,800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은 아프리카 개발은행(ADB)과 아프리카개발기금(ADF)에서 조달하고 있다.

뽀바사는 동아프리카의 가장 수출입이 많은 항만 도시임. 좋은 사회간접자본을 갖추었으며 노동력이 풍부하고, 해안 농업 원자재(코코넛, 캐슈 너트)의 입수가 쉽고, 나이로비 다음으로 산업활동의 집중의 규모가 큰 지역이다.

여러가지 입지조건으로 볼 때, 특히, 뽀바사가 수출입항인 점을 고려, 원자재의 운송 및 완제품 수출 면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 주소: P. O. Box 89474 MOMBASA Room 7, New Baggage Hall, Kenya Ports Authority
- 전화/팩스: (254-41) 228413

- 수출자유공단에대한 상세정보 웹사이트: www.epzakenya.com

38. 공장설립

가. 공장등록

1) 기존공장 등록

기존공장의 소유자는 1달 이내에 CI에게 제1단계 공장운영계획법(the First Schedule to the Factories Act)에 명시된 기본사항을 서면상으로 제출함으로써 공장 등록을 신청. 통지를 받은 직후, CI는 공장 등록을 승인하고, 공장 소유자에게 제2단계 공장운영계획법(Second Schedule to the Factories Act)에 명시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게 됨.

2) 신규공장 등록

신규 공장등록은 FSFA에 명시된 사항대로 서면상으로 CI에 신청하며, 그 후 CI의 공장에 대한 용도 적법성을 심사하여 접수. 제2단계 공장 운영계획법에 명시된 대로 증명서를 발급.

등록 없이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공장을 소유하거나 이용한 사람은 공장운영법(FA)에 따라 최고 10만 실링 (약 1,300불)의 벌금, 혹은 최대 3달간 징역을 적용하며, 위반이 계속될 경우, 7일을 넘지않는 벌금 또는 징역

나. 공장임대 및 구입 비용

Application and License Fees

	개발 및 운영자(Developer/Operator)	기업(Enterprise)
Application Fee	US\$ 250	US\$ 250
Annual License Fee	US\$ 5,000	US\$ 1,000

1) 건물임대료 (Athi River 수출자유지역)

- 산업용 건물 (Industrial buildings)
 - 임대료: 매년 평방피트당 미\$2.8 (또는 평방미터 당 미\$30.1) + 15% 봉사료
 - 임대조건: 6년 단위로 갱신가능하며 2년마다 임대료 조정
- 특수지역(Serviced Plots)
 - 임대료: 매년 헥타르당 미\$5,000 + 15%봉사료 (최소 임대기간 30년간) 또는 60년 임대료 일시지불 시 헥타르당 미\$100,000불
 - 오피스(Office space in Administration block) : 매년 평방 피트당 미\$ 2.80 + 15%봉사료
- 참고사항
 - 상기 가격은 케냐 관보 공시 가격이며 환율 및 기타 요인으로 변동가능함
 - 상기 가격은 수출자유지역 (EPZ)내의 경우를 예시함.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케냐 투자청: Kenya Investment Authority (KIA)

1) 본사

- 주소: 8th Floor, National Bank of Kenya Building, Harambee Avenue, P.O. Box 55704-00200 City Square, Nairobi, Kenya.
- 전화: (254) (20) 221401 - 4
- 휴대폰: (254) (722) 205424 / 209902 / (254) (733) 601184
- 팩스: (254) (20) 243862
- 전자메일 : info@investmentkenya.com
- 웹사이트: <http://www.investmentkenya.com>
(Webmaster: webmaster@investmentkenya.com)

2) 공항사무소

- P.O. Box 19083 Nairobi, Kenya
- 전화: (254) (20) 822111 Ext. 136
- 팩스: (254) (20) 822907

3) 엘도렛 사무소, Eldoret Regional Office

- 주소: National Bank Building 2nd Floor, P.O. Box 4638, 30100 Eldoret
- 전화: (254) (53) 2061204, 2033108

□ 참고사항

케냐 투자청은 본래 Investment Promotion Council에서 2005년부터 KIA로 변경되었으며, 케냐내 모든 해외 직·간접 투자에 대하여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기관 임.

나. 케냐중앙은행 (Central Bank of Kenya)

- 담당자: The Bank Secretary, Central Bank of Kenya
- 주 소: Haile Selassie Avenue, P O Box 60000-0200, Nairobi.
- 전자메일: info@centralbank.go.ke
- 홈페이지: <http://www.centralbank.go.ke>
- 지점

Branch	Address	Telephone	Fax	Telex
Head Office	HaileSelassie Avenue, P.O. Box 60000-0200, Nairobi	+254 20 2861000 +254 20 2860000	+254 20 340192	22324
Mombasa	Nkurumah Road, P.O. Box 86372, Mombasa	+254 41 230954/9	+254 41 222524	21230
Kisumu	JomoKenyatta Highway, P.O. Box 4, Kisumu	+254 57 2020128	+254 57 45386	31047
Eldoret	Uganda Road, P.O. Box 2710, Eldoret	+254 53 2033325	+254 53 32844	35005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가. 자본시장관리국 (Capital Market Authority)

- 주소: Re-insurance Plaza, 5th Flr, Taifa Road, P.O. Box 74800-00200, City Square-Nairobi,

- 전화: +254-020-226225/221910,
- 팩스: +254-020-228254
- 전자메일: corporate@cma.or.ke
- 홈페이지: www.cma.or.ke
- 참고사항: 주식시장을 관리 통솔하는 기관

나. 수출자유공단 관리소

- 주소: Athi River EPZ, Viwanda Road off Namanga Highway P.O Box 50563 00200 Nairobi, Kenya.
- 전화: (254 - 45) 26421/2-6
- 팩스: (254-45) 26427
- 전자메일: info@epzakenya.com

다. 케냐제조자협의회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주소: Mwanzi Road, Off Peponi Rd, Westlands P.O Box 30225-00100 GPO, NAIROBI
- 전화: 3746005 / 7, 3746021 /22
- 팩스: 3746028, 3746030
- 휴대폰: 0722-201368, 0734-646005
- 전자메일: info@kam.co.ke
- 웹사이트: www.kam.co.ke
- 참고사항: 제조업자들의 권익보호 및 제조업 관련 제도 및 관련법 제정, 시행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단체

라. 케냐 표준청 (Kenya Bureau of Standards)

□ 본사

- The Managing Director
- P.O Box 00200 54974, Nairobi, Kenya
- Tel: (+254 02) 605490...pilot line, 605506,605550, 605573,605574,605610,605634,
- Mobile: 0722202137/8, 0734600471/2
- Fax: (+254 02) 604031, 609660
- Email: info@kebs.org
- HomePage: www.kebs.org
- I.C.D OFFICE: 전화 020-820859
- 공항사무소: 020 825501

□ COASTAL 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99376, Mombasa
- Tel: (+254 041) 229563, 230939/40
- Fax: (+254 041) 229448
- E-Mail: kebs-msa@swiftmombasa.com

☐ LAKE 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2949, Kisumu
- Tel: (+254 057) 22396, 23549
- Fax: (+254 057) 21814
- E-Mail: kebs-ksm@swiftkisumu.com

☐ ELDORET OFFICE

- P.O. Box 8111, Eldoret
- Tel: (+254 053) 33151/63377
- Fax: (+254 053) 33150
- E-Mail: kebs_eld@africaonline.co.ke

☐ MT KENYA 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1790, Nyeri
- Tel: 061 2036/7
- Fax: 061 2038

☐ NORTH EASTERN REGION

- P. O Box 978
- GARISSA

☐ NORTH RIFT REGION

- The Regional Manager
- P.O. Box 2138, Nakuru
- Tel: 051 210553/5

☐ BUSIA OFFICE

- P.O. Box 19, Busia
- Tel: 055 22044

☐ NAMANGA OFFICE

- P.O. Box 217, Namanga
- Tel: 045 5132288

☐ MALABA OFFICE

- P.O. Box 330, Malaba
- Tel: 055 54270

□ ISEBANIA OFFICE

- P.O. Box 166, Isebania
- Cell: 0735 740159

41. 노무관리

가. 노동법규

단일법이 아닌 7개 노동관련법이 노동조건과 고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각 고용법, 임금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 근로자보상법, 노동쟁의법, 노동조합법, 영업시간법, 몸바사 영업 시간법 등이다.

나. 노동력

정부출자기관 및 민간 교육기관에서 숙련노동력 교육에 주력하나 아직 숙련노동자가 부족하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수준이다.

다. 임금

최근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이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산업과 농업 부문으로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연합과 노동 조합간 단체협약으로 결정이다.

최근 5년간 인플레이션 증감율(%): 1.96 (2002), 9.82 (2003), 11.62 (2004), 10.31 (2005), 11.2 (2006.5월)

(자료원: 케냐중앙은행발행 Monthly Economic Review 2006년 5월호)

라. 근로조건

노동자 기본임금의 5%, 금액으로 KSh200 범위내의 금액을 노동자와 고용주 각 50%씩 국가사회안정기금에 납부해야 하며, 월평균 Ksh 1,000이상을 받는 경우 KSh 30~320을 국가 의료보험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시간제 및 임시직은 복지혜택이 없는 대신 법정 최저일당이 정식 고용된 경우보다 더 높다.

연간 휴일은 회교도 12일, 비회교도 11일이며, 연간 법정휴일은 최소 21일이나 대부분 24~26일임.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고 초과근무수당은 평일 통상임금의 1.5배, 휴일 2배를 지급하고 있다.

마. 해고

수습기간이후 회사자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고가 어려워 많은 회사들이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여 고용하고 있다.

바. 외국인 취업

공식적으로 외국인 고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지만 이민국(DI)이 엄격히 감시하고 있음. 종전에는 케냐인이 할 수 없는 자영업, 전문직은 Class H의 노동허가 취득이 쉬웠으나 최근 법인 설립 및 투자용 외화반입 조건인 Class A로 바뀌어 외국인 취업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사. 노동조합

중앙무역연합회 (COTU, Central Organization of Trade Union)가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는 정부, COTU 및 케냐고용주연합(EFK)으로 구성되는 3자 노동쟁의위원회에 의해 조정된다. 노동쟁의 중재는 COTU와 EFK의 대표 및 노동부로 이루어진 국민자문위원회(NCC)가 담당이다.

Trade Unions Act Chapter 233에 의거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1개 사업장 종사원이 10인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사업장 종사원과 연대해 10인 이상이 되면 노조를 구성할 수 있고 Trade Unions Act에 의거 노조활동은 보장되어 있다.

노동자의 50% 정도가 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조원 대부분이 사무직이 아닌 공장 노동자이고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실업률이 높은 관계로 노사관계는 원활하며, 정부의 영향으로 태업, 파업 등의 사태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아. 파업

단체협상이 결렬되었거나, 고용주가 산업재판소 제소를 거부하거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쟁의통보 접수후 21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파업율은 매년 100건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실업률이 높고 계속 상승세여서 파업이 1주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적다.

42. 조세제도

가. 법인세 (Corporate Tax)

자국 내 법인인 경우 모든 수입에 대하여 30%, 해외업체의 지사 37.5%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이로비 스톡 매장(NSE, Nairobi Stock Exchange)에 새로이 등록된 업체의 경우는 등재 후 3년까지 27%를 징수한다.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에서 면제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거주인 이든 비거주인 이든 5%에 해당하는 원천세 (Withholding Tax) 적용하며, 그 이후의 세금에 비적용하며, 재정기관에서 주고받은 배당소득은 면세를 적용한다.

나. 부가가치세 (VAT)

부가가치세(VAT)는 케냐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한다.

기본세율은 16% (2003.6월 정부예산안에서 이전 18%에서 하향조정 됨)이며, 가공전의 농업 생산물과 항공기, 건강위생, 교육, 농업관련 품목의 수입 및 서비스는 면세이다.

종전에는 연간 수입이 4만6천불 이상인 경우 VAT 등록이 의무였으나, 2002.6월 예산안 이후 3만8천불 수준으로 낮추어 대부분의 업체가 VAT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만 부과하던 식용유, 비스킷, 케첩, 소세지, 과일잼 등도 도.소매 전과정에 VAT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종전에 부과하지 않았던 건물의 매수에도 VAT를 적용한다.

다. 물품세 (소비세)

물품세는 주류, 담배, 오토바이, 자동차, 연료, 화장품, 생수, 비스킷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각 종류별 로 다르게 적용한다.

라. 영업세 : 없음

마. 소득세

현지법인 및 개인회사의 경우 : 법인세 30%이며, 외국계 지사의 경우 : 법인세 37,5%이다.

공장 설치지역에 따라 2-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든 케냐 거주인(Resident)이며, 거주인의 요건은 케냐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중 183일 이상 또는 3년 연속 연평균 122일 이상 케냐에서 근로에 종사한 사람 이다. 비거주자에게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케냐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 과세 된다. 세율은 소득 수준별로 10%에서 30%까지 6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배우자 및 보험공제에 한정되고 있으며, 주택 및 교육공제는 폐지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표 (2004년 6월 개정)

연간 소득액 (Ksh)	적용세율 (%)	총 세금액 (Ksh)
0 - 121,968	10	12,197
121,969 - 236,880	15	29,434
236,881 - 351,792	20	52,416
351,793 - 466,704	25	81,144
over 466,705	30	

참고 영문 웹사이트 : <http://www.investmentkenya.com>

43. 외환관리

가. 외환관리

95년 7월 외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중앙은행법(the Central Bank of Kenya)이 개정되어 외환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 되었다. 개정이전 해외송금이나 직접투자 시 중앙은행의 심사

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 후 대규모 외환거래를 제외하고는 상업은행 인가로 가능하다.

비거주자들도 케냐 국채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투자목적 외환매입 및 매도가 자유화되었고 수출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외화를 영수하여 국내은행 외화계좌 예치가 가능하다. 미화 10,000불 이상 매입 시 실수거래증빙 및 중앙은행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 사설 외환교환소(Forex Bureaux)도 인가하여 95년 이후 13개의 환전소가 설립되었으며, 2006년 현재는 95개가 공식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나. 외환규제내용

외국인투자보호법(The Foreign Investments Protection Act Chapter 518)에 의거 기업허가 승인서(Certificate of Approved Enterprise)를 획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과실송금과 투자 원금의 송금도 보장을 받는다.

과실송금은 은행 승인을 필요하나 회계검사 후 세후 이익 범위 안에서 송금이 가능하고 비거주자 출장관련비용 (호텔 숙박비, 비행기표, 공항세) 환전 한도도 철폐하고 있다.

다. 환율제도

199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단일환율제를 운영하고 있다.

- Ministry of Finance
 - 주소) P.O.Box 30007, Nairobi
 - 전화) (254-20) 338111
 - 전자메일) info@treasury.go.ke
 - 홈페이지) <http://www.treasury.go.ke/>
- 케냐의 무역관련제도 영문참조 사이트 : <http://www.investmentkenya.com>

4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이사화물 통관 및 수령

이사 화물이 케냐 몸바사 항구나 NAIROBI (EMBAKASI)에 도착되면 현지 통관 업체를 통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이사짐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서류는 통관신청서, B/L 및 PACKING LIST 등을 첨부해야 한다. 통관시 소요기간은 보통 1-2일 소요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급행료 등이 요구될 경우도 있다.

몸바사 항구가 상시 적체 상황으로 간혹 부산-몸바사 구간보다 몸바사에서 하역 및 나이로비 운송 기간 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몸바사-나이로비 육로 수송은 통상 1개월여 소요되며, MOMBASA-NAIROBI간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주일 소요된다. 통관 수송된 컨테이너는 집앞까지 운반되므로 SEAL등 확인후 직접 개봉할 수 있으며 하역도 통관업자를 통해 인부를 고용하면 편리하다. MOMBASA항-나이로비 간 육상 통관대행시 운송료 및 통관수속료 등 제반경비는 약 \$1,500정도이다.

나. 집 구하기

케냐의 치안 악화로 가능하면 집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독주택은 비교적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나 도둑등 침입이 용이하여 별도경비 및 경비견 등을 두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택계약은 대부분 Lloyd Masika등 주택 및 아파트 임대소개 전문회사를 통하여 임차 건물을 물색하며, 계약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연장이 가능하다. 재계약시 임차료 인상율은 통상 10%전후 이다. 입차 보증금은 2-3개월분 월세를 요구하며, 월세는 3개월단위 선불, 임차만료시 거의 1개월분을 수리비로 상계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입주시에 건물주 입회하에 건물의 창문, 출입문 등 내부상태 및 정원 화초 등을 확인해 두어야 만료시 원상복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지 아파트 및 주택은 대부분 Unfurnished 이며 Furnished된 경우 거의 50% 이상 비싸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관련보험제도는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 보험에 가입치 않으나 치안 불안등을 고려 하여 고가품 등 품목별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권장된다

주택 계약시 공동주택 입주시 전화, 수도, 전기 가입시 중계업체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나 일반 주택의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기세는 주인이 일괄처리, 매달 입주자에게 징구하거나, 아예 입주자명으로 이전하여 지불하게 할 수 있다. 물세는 월세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따로 입주자가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는 대부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상당기간이 소요된다.

다. 은행 구좌

주재국은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자유화하여 외국인은 현지은행 및 외국계 은행에 외환구좌와 현지화 구좌 개설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화구좌 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최소 예금을 입금시키면 된다.

라. 교육여건

케냐내의 학교로는 현지학교와 외국인 학교로 구분된다. 현지학교는 수업료가 저렴하나, 수준이 낮고 환경이 열악하여 권장하지 않으며 외국인 학교는 영어학교, 불어학교 등이 있고, 한국인의 경우 주로 International School을 권장한다.

2살 반 또는 3살부터 Preparatory School (유치원)에 다닐 수 있으며,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은 International School of Kenya를 비롯한 Braeburn School (영국계, 유.초.중.고교 과정), Hillcrest School (영국계, 유.초.중.고교 과정), Rosslyn Academy (미국계, 유.초.중.고교과정) 등이 있다.

나이로비 내 외국인 학교

학교명	주 소	전 화	팩 스	전 자 메 일
Int'n'l School of Kenya	P.O. Box 14103, Nairobi	254-20-582421	582451	iskadmin@isk.ac.ke

Hillcrest Sec. School	P.O. Box 24819, Nairobi	254-20- 882222	882350	admin@hillcrest.ac.ke
Braeburn	P.O. Box 45112, Nairobi	254-20- 572572	862450	braeburn@net2000ke.com
Rosslyn Academy	P.O. Box 14146, Nairobi	254-20- 520036	521306	rosslyn@rosslyn.icconnect.co.ke

[인터네셔널 유치원]

- ① Riverside Farm Nursery School
 - P.O. Box 47301, Nairobi
 - 전화: 254-20-442079
- ② International Montessori School (* 한국인이 운영)
 - P. O. Box 10364, Nairobi
 - 전화: 254-20-569701, 576110, 576112

* 케냐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리스트 => <http://www.kenyaweb.com/educ/nairobi.html>

마. 전화신청

가정용 유선전화는 전화국에 신청하면 통상 3-6개월이 소요된다. 유선전화 신청시 기본적으로 전화통을 전화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그후에 한국산 전화기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요즘은 유선전화에 고장이 잦고 비용이 비싼 관계로 이동전화의 인기가 높다. 현재는 케냐나 Safaricom 과 Celtel의 두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각각 5백만, 3백만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통신은 한국의 CDMA방식과 다른 GSM방식을 쓰므로 휴대폰과 연결용 키트 그리고 선불용 전화카드를 구매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 등록 절차가 필요없고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 장기 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이 중단되나 요금충전하면 별도 별금없이 다시 동일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도 환불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이용요금이 저렴하여 케냐에 정착이 확정된 후에 사용하면 유리하다.

바. 정부등록

입국시 우선 방문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한 케냐 명예영사관 (파라다이스 그룹, 서울 장충동 소재: 담당-안진선, 전화 02-2271-2127)에서 취득하거나 나이로비 공항 입국시 입수 가능(24시간 운영)하며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직접 발급받을 경우에도 50불이 소요된다. 관광비자로는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며 필요시 이민국에서 3개월간 갱신이 가능하나, 더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제외하는 제3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방문비자 상태에서 현지투자를 근거로 사업자비자(H Class)로 변경이 가능하며 공식적으로 3-6개월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행료를 요구하거나 근거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태반이며 서 처음부터 모든 구비서류를 잘 갖추어 사업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비자(A class)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는 재정회계관리, 특수기술보유, 친인척 관계등에 한하여 이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주재국에 정식 체류비자가 확보되면 6개월이후에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사무실을 통해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1년이상 방치할 경우는 연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교관 및 공무원의 경우는 대사관을 통해서 주재국 외무부를 거쳐 외교관 ID를 부여받게 되며 외국인 등록이 필요치 않다.

사. 자동차 구입

케냐는 대중교통 수단이 낙후되어 한국인이 현지 정착시에는 차량구입이 필수적이다. 외교관의 경우 1대 의 차량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은 정규 수입 통관절차를 밟아 수입을 할 수 있다. 자동 차 수입 및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B/L원본, Packing List원본 등은 각각 4-5매가 필요하다. 한국 에서 사용하던 차량의 경우, 현지법으로 왼쪽 핸들 차량 및 8년이상된 차량의 경우는 수입금지 되었다.

차량운행허가(Road Licence)는 차량등록소로부터 1년 간격으로 취득하며 운전면허는 일단 본국에서 출국시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아 휴대함이 바람직하고 현지 부임 후 현지 면허증으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차량 보험관련 제3자 보험은 의무적이며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고되나 사고후 보험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중형차량 연간 보험료는 약 \$800-\$1,000 정도이다.

유류는 통상 현금혹은 Credit Card(일부 주유소에서만 가능)로 대부분 주유소에서 주유 가능하며 통상 유연휘발유나 디젤이 가용하다.

케냐의 경우 도로사정이 극히 불량하므로 4륜 구동차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물 사파리 에는 4륜 구동차가 필수적이다. 시내 주행시에는 세단형도 무난하다. 현지에는 불란서(Peugeot), 일본 (Toyota), 독일(Benz) 등 외국차량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국산(현대 및 대우, 쌍용 무쏘, 기아 스포 티지)차량이 널리 보급되어 인기가 높으며 부품구입을 포함한 서비스도 용이하게 받을수 있다. 차량용 스페어파트의 가격은 한국기준 5-7배정도 비싸 해당 차량용 소모품 부품은 이사짐으로 송부하는 것도 절약방법이다.

□ 운전시 유의사항

케냐는 우측핸들 시장으로 차량 운전방식이 영국과 같이 오른쪽(Right Hand Drive)이며 교차로도 이른 바 Roundabout(로타리)으로 연결되어 있어 처음 운전시 각별 유의해야 한다. 로타리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 및 오른쪽 운행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대부분 로타리 및 가로에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없거나 불량하여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복잡한데다 운전 습관이 매우 난폭 하고 무질서하여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운전시 각별 주의 요한다.

최고 속도는 80km이나 고속도로(우리나라 국도 수준도 못미침)에서는 많은 차량이 100Km 이상 질주하며 현지 봉고형 버스인 마타투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발생율이 높다.

안전벨트는 생명선으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가로등이 거의 없고 있어도 대부분 희미하여 피부 색깔이 어두운 현지인들이 도로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야간 운전시 특히 조심하여야 하며 대부분이 2차선 도로에다 하이빔을 사용하고 있어 추월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은 운전교습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정시간 교습후 용이하게 운전면허 취득 가능하다.

- 운전교습소 : Automobile Association of Kenya(AA)
- 취득 소요시간 : 총 20시간
- 소요경비 : 약 \$200

아. 생필품 구입관련

1) 전기전자 제품

- TV 및 Video 방식 : PAL 및 VHS (Multi시스템 권장)
- 전기시스템 : 220-240V/50HZ

케냐의 경우 전압이 고르지못하고 모터가 포함된 가전제품의 경우 Hz가 달라 한국에서 가져오는 가전 제품의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일시적인 전압 상승에 대한 가전제품 보호를 위한 전압안정기 (stabilizer)가 매우 필요하다. 전압 안정기는 현지에서도 구입 가능하나 비싼 편이다. 한국산 가전 제품인 경우 현지 가전 에이전트로부터 대부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가구, 비품 및 장식품

케냐 현지 제작된 제품은 품질수준이 비교적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편이며, 기술 제휴 제품 혹은 수입품은 아주 비싸므로 이삿짐(컨테이너) 속에 식탁, 침대, 책상, 소형 장식장 등을 가져오는 것이 편리하다. 타월, 침구류는 고가이므로 임기중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준비하고 가정 상비약, 화장품 등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사화물 탁송 및 보험과 관련 아프리카지역은 각종 도난 사고가 빈발하므로 이사화물은 반드시 컨테이너에 넣어 Door to Door(부산-NAIROBI)로 탁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분실 또는 도난사고에 대비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3) 한국식료품

나이로비에는 한국 식품점이 2-3개 있어 두부, 콩나물, 숙주나물, 고추장, 된장 등 제한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 품귀되는 때가 있으나(배추, 상추, 무우, 당근, 시금치 등) 일반 야채류는 현지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다. 단, 현지구입이 가능하나 가격이 비교적 비싼 아래 한국식품은 이삿짐으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된장, 고추장, 간장, 냉면, 조미료(각종), 라면, 김, 일정 기간후 현지에서 고추장, 된장을 직접 담글 수 있도록 고추가루, 메주가루 등.

- 건어류 일절(멸치, 북어포, 오징어포, 대구포 등) 및 장기 보관에 문제점 없는 통조림류 일절

4) 주방용품

나이로비는 고지(해발 1,650m)인 관계로 압력 밥솥 1-2개는 필수적이다.

자. 병원 및 기타 주요 연락처

종합병원 응급실	NAIROBI HOSPITAL	2722160 Ext. Emergency 0722-204114/5, 0733-639301/2
	AGA KHAN HOSPITAL	3740000 - 3740012
	M.P.Shah Hospital	374-2763~7
야간약국	KENMART PHARMACY (KENYATTA병원내)	2726148
	NAIROBI HOSPITAL	2714400
	AGA KHAN HOSPITAL	3742531
경찰기관	CENTRAL POLICE STATION	222222~5
	KILIMANI POLICE STATION	2722222
	MUTHANGARI POLICE STATION	4442800
	KASARANI POLICE STATION	803310
	MUTHAIGA POLICE STATION	3762611
	INDUSTRIAL AREA STATION	557945,558393
화재시	FIRE STATION	222181/2
앰브런스 요청	ST. JOHN AMBULANCE	210000, 0721-225285
	FLYING DOCTORS SERVICE	501280
차량 고장시	3S Auto (한국인 운영)	4443880
	AUTOMOBILE ASSOCIATION OF KENYA(A.A.K)	2720382/2720383
각종 고장신고	전화 고장신고	987
	전기	주간 : 225352/3742742 야간 : 3742742/225352
	수도	2723103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MOMBASA PENNY PROFIT STORE(MPPS)	766534/762577